

2017 년도

지배구조·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포함)

(2018. 3. 9.)



본 공시자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본 공시자료는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3. 9.

은행장 박진회



<목 차>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1. 지배구조 일반**
- 2. 이사회**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6. 감사위원회**
- 7. 리스크관리위원회**
- 8. 이사회운영위원회 (2017년 3월 30일 폐지)**
- 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10.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첨부1. 정관
 - 첨부2.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3. 이사회 규정
 - 첨부4.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5.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 첨부6. 보수위원회규정
 - 첨부7. 사외이사운영규정
 - 첨부8.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9. 경영승계규정
 - 첨부10. 사외이사 검토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한국씨티은행은 20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금융기관인 씨티그룹 (Citigroup Inc.)의 한국 내 현지법인으로 160여개국에 약 2억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그룹의 자회사로서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및 경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약 160여개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국가에서 금융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매트릭스(Matrix) 조직구조에 기반, 책임 있고 균형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지배구조는 주주총회를 최고의 의결기구로 하고,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이사회가 업무집행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전문경영인인 은행장을 감독하면서 은행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이해관계자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며, 임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하고, 은행장의 경비집행 전결한도를 정하는 등 경영진의 일상 경영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은행장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이며, 이사회규정 제7조에서는 은행장의 책임으로 “주요현안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이사회의 지침 수행”을 규정하여,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일상적인 견제, 감독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전문적인 감독 및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속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부속위원회에서의 심의·결의 사항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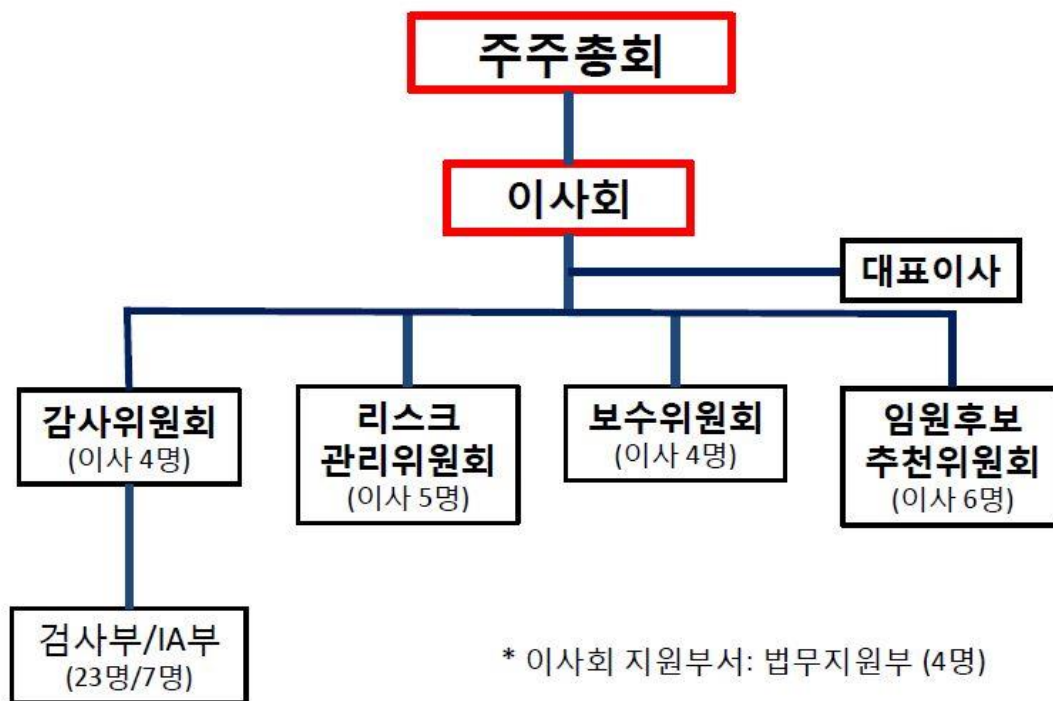
은행은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및 평가 등을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의 20일전 은행 홈페이지 (www.citibank.co.kr)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

배구조법")의 취지에 따라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매년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정을 점검하며, 2017년 3월 30일 이사회에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사외이사 운영규정, 경영승계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등 중요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전면 제·개정 하였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018년 2월말 현재)



(2) 지배구조의 특징

이사회는 상임이사인 대표이사 은행장 1인과 글로벌 금융 전문가인 비상임이사 2인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사외이사 구성비율 57.1%)되어 있으며, 경제일반, 회계, 법률 및 IT 분야 등의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사외이사진을 구성함으로써 이사회 의 견제 및 감독 기능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씨티그룹의 자회사인 씨티은행(Citibank N.A.)이 미국 연

방준비법에 의거 해외 투자를 위해 설립한 COIC(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의 자회사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의 비상임이사 2인은 씨티그룹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경영책임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와 씨티그룹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리스크책임자(Chief Risk Officer: CRO)이며 이들 2인의 비상임이사는 씨티그룹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금융기관의 선진적인 운영기법과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자회사인 한국씨티은행의 운영에 책임 있는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그 부속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4개의 부속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부속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감사위원회의 경우 2/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균형 있는 견제와 감독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2017년 3월 30일 결의를 통해 이사회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의 기능을 이사회로 이전하여, 이사회가 직접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의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사본부장에게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임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6조). 또한 씨티그룹의 감사방법론에 따른 감사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산하에 Internal Audit 팀을 두고 있습니다.

은행은 또한 이사회 내 부속위원회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고 그 지급방식을 통제하여 임직원들이 단기적인 재무성과를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은행의 건전 경영에 힘쓰도록 견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은 지배구조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3월 30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은행장 후보를 추천 및 관리하여 은행장 유고 등 비상시에 경영의 안정적 승계를 도모하고, (2)엄격한 심사 및 추천 절차를 거쳐 사외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후보를 추천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016년

12월 1일 은행장 경영 승계 계획을 검토하고 은행장 후보군을 발굴하였으며, 2017년 9월 22일 현재 후보군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여 책임경영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2018. 2월말 기준)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성 (사외 이사수/ 구 성원수)	의장 (이름/상임 · 사외 · 비상임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업무집행 최고 의사결 정기구	4/7	박진회/상임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사외이사운영규정
감사위원회	은행의 업무 감사	4/4	김경호/사외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규정
리스크관리 위원회	리스크관리 방침 및 전략 수립	4/5	안병찬/사외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	보상체계 수립	3/4	한상용/사외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보수위원회규정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임원(사외이사, 대표이 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4/6	김경호/사외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아래의 3개 소위원회는 각 2017. 3. 30.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폐지되었음.				
이사회운영 위원회*	이사회·각종위원회 개 최 및 운영 계획 수립	2/3	박진회/상임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	4/5	한상만/사외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사외이사운영규정
**감사위원후 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추천	4/4	김경호/사외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이사회는 2017년 3월 30일자로 이사회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이사회로 통합함.

**이사회는 2017년 3월 30일자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함.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3. 이사회 규정
- 첨부4.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5.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 첨부6. 보수위원회규정
- 첨부7. 사외이사운영규정
- 첨부8.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9. 경영승계규정
- 첨부10. 사외이사 검토보고서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이사회는 은행의 업무집행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상법 제393조 제1항, 제393조의2 제2항 및 지배구조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사회의 권한 사항을 그 주요 권한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은행 경영의 기본이 되는 주요사항으로 은행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전문경영인의 경영활동을 지원 또는 견제하며, 이사회 부속위원회에 전문적 권한을 위임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부속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수정 또는 그 활동을 평가·개선함으로써 업무집행에 관한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 · 전략의 수립 및 평가

한국씨티은행 이사회는 은행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영계획을 승인합니다(이사회규정 제8조 제2항).

이에 따라, 2017년도 11월에 은행장, 재무기획그룹장 및 각 사업그룹장간 협의를 통하여 2018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포함한 경영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2017년 12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2018년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을 논의 및 승인하였습니다. 은행의 2018년도 주요 경영목표는, 지난 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소비자금융구조 개편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씨티에 기대하는 고객의 요구에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은행은 고객의 수요와 목표 상품에 보다 집중하고, 디지털 बैं킹을 강화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고객 자산관리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아시아지역 영업 기회의 확대와 차세대 고객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은행은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특히 강화하고, 고객이익과 가치를 위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며, 차세대 전산시스템에 투자하는 등 디지털 역량을 배양하고,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영계획과 별도로 재무 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 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 중간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제4조 제1항).

(나) 정관변경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안을 심의 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 제1항 제2호, 이사회규정 제 8조 제2항 제3호 가목).

이에 따라 2017년 3월 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2016년 8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배구조법을 정관에 반영하여 이사회부속위원회들을 정비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2017년 3월 30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정관

변경안을 참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배구조법의 관련 내용을 정관에 반영, 보다 투명하고 강화된 지배구조를 실현하였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승인

한국씨티은행 이사회는 은행의 예산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영계획을 승인합니다(이사회규정 제8조 제2항 및 경영계획규정 제11조).

예산계획과 관련하여, 각 사업그룹들이 제출한 2018년 예산계획을 바탕으로 은행장 및 재무기획그룹장, 각 사업그룹장들이 상호 협의를 거쳐 2018년 경영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2017년 12월 14일 위와 같이 마련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경영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2018년 당행은 큰 틀에서 전체 인원을 변화 없이 유지하는 한편, 지난 2017년도 소비자금융 구조 개편을 통해 통합된 점포 수를 유지하고, 2018년 중 분당에 다섯번째 WM 센터를 개점하는 등 필요한 투자를 실행하고, 생산성 관리를 통한 비용 감소에 기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 결산안에 대한 초안을 내부회계관리책임자(재무기획그룹장)가 마련, 외부 감사인 검토를 거쳐 2018년 2월 12일 감사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였고,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논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 총수익 1조 2,059억원: 순이자마진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출자산 및 유가증권 등의 감소로 이자수익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비이자수익 호전 등으로 전년대비 644억원 증가
- 비용 8,088억원: 해외용역비 계상 감소 및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증가로 전년대비 258억원 증가
- 당기순이익(대손준비금 차감전) 2,437억원: 비용과 대손충당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익의 증가와 법인세 환급 등으로 전년대비 317억원 증가
- 배당 내용: 총 배당금 939억원(주당 배당금: 보통주 295원, 우선주 345원)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한국씨티은행 이사회는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대해 심의 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 제1항 제3호, 이사회규정 제8조 제2항 제3호 다목). 또한, 기타 조직의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당행 경영진은 2015년 11월 17일 소비자금융 전략 관련 은행의 목표와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한 이래, 사외이사 교육 및 연수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사진들 앞에 소비자금융모델 변화 방향을 설명하고, 2016년 12월 12일, 2017년 2월 2일, 2017년 3월 27일 수 차례에 걸쳐 금융 디지털화 및 고객 가치 증대를 위한 차세대 소비자 금융전략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사회 앞 보고하였습니다. 2017년 6월 2일 이사회에서는 계획에 따른 소비자금융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고, 이와 더불어 소비자금융 구조를 개편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관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위 소비자금융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이사회는 2017년 7월 3일 (주)한국씨티은행의 완전자회사였던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을 승인하고, 2017년 9월 11일 수정된 주식매매계약을 다시 한 번 승인하였으며, 2017년 11월 22일 해당 매각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은행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자 전략 및 중요한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앞에 적시에 보고하며, 주요 진행 사안에 대한 이사회 조언을 구하는 등 은행의 중요한 조직변경에 있어 고객 가치 증대를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 평가

한국씨티은행 이사회는 2016년 7월 20일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전면 개정한 이래, 2017년 2월 15일 이사회에서는 은행이 경영금융투자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14일 이사회에서는 201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은 매 분기 내부통제현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 제4호에 의거 은행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31일 이사회는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 제27조에 따라 은행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적시에 통제·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모든 리스크 관리 규정들을 망라하여 리스크 관리의 원칙을 마련한 위험관리기준을 승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정된 위험관리기준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리스크현황을 보고받으며, 리스크관리 기본 방침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15일 이사회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은행이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험관리기준에 추가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정관 제26조의 2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며, 이사회규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은행장의 선·해임은 이사회에 의한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승계계획 수립·운영·평가와 관련하여 은행은 현재 매년 은행장 후보를 포함한 임직원에게 대한 핵심인재검토(Talent Review)절차를 통해 각 직급에 맞는 적절한 후보자 관리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등 체계화된 후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 이사회는 2016년 12월 1일 은행장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과 후보를 관리하는 씨티그룹의 핵심인재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하였습니다. 한편, 2017년 10월 27일 은행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7년 9월 2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2017년 10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박진회 사내이사를 같은 날 이사회에서 은행장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 이사회는 견고한 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하여, 2011년 5월 이사회에 의결된 지배구조의 구성과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하여 은행이 준수하여야 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15년 3월 27일 이사회에서는 당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전면 개정하여, 지배구조의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을 이사회에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6년 7월 20일 이사회에서는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이사회에 의한 권한 사항으로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및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추가하였습니다. 2017년 3월 30일에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의한 권한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사회부속위원회를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배구조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였습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 · 감독

한국씨티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씨티그룹의 자회사로서 글로벌 금융기관의 특성 상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거래는 은행업 본연의 업무의 일부로 한국씨티은행에 이익이 되는 거래입니다. 그렇지만 상법 제398조, 은행법 제35조의 2 및 이사회규정 제8조 제2항 제4호 다목에 의거 이사회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승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중 이사회는 2017년 2월 15일 및 2017년 12월 14일 이사회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대주주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을 위하여 2017년 6월 2일 및 2017년 11월 22일 대주주와의 거래를 승인하고 2017년 8월 24일에는 이사진 앞에 한국씨티은행의 공급업체에 대한 전반적 관리 및 감독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은행의 임원은 지배구조법 제10조에 의거 겸직이 제한되며, 한국씨티은행의 윤리강령에서는 임직원의 이해상충행위 방지 및 겸직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준법감시부서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기타

이사회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바, 2017년 3월 30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부속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 부속위원회 연간계획과 사외이사의 활동 목표 시간을 승인하였으며, 사외이사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2018년 2월 12일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평가하고,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개선할 점을 논의하였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한국씨티은행 이사회는 5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3인 이상

으로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 12조 제1항, 정관 제20조 및 제23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조 제1항). 2017년말 현재 이사회는 7명의 이사(대표이사 은행장 1인, 비상임이사 2인, 사외이사 4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2명의 1년 임기가 모두 만료하였고, 그 중 1명의 사외이사를 1년 임기로 재선임하고 사외이사 1명이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상임이사(대표이사, 이사인 수석부행장 또는 부행장)와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사외이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시 임기는 1년이며 최대 재임기간은 5년으로 제한됩니다(정관 제21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비상임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당행 대주주인 씨티그룹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임원입니다. 비상임이사는 글로벌 은행으로서의 업무 연계성, 선진 금융기법의 전수 및 책임 경영체제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씨티그룹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최고경영자와 최고리스크책임자 2인을 선임하여 이사회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여기에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특히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의 경우에도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제6조,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상임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은 윤리기준과 씨티그룹의 “우리가 공유하는 책임”에 대한 약속을 이행 할 수 있으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1항).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전문성(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공정성, 윤리성, 충실성에 관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6조 제3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2항,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함)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정관 제24조 제1항).

2017년 3월 3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대표이사 은행장을, 선임사외이사로는 김경호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선임사외이사인 김경호 사외이사는 현재 홍익대학교 부총장 및 경영대학교 교수이며,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재정통계자문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회계 전문가입니다. 2016년도 및 2017년도에는 은행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회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당행의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감사 업무에 관한 내실있는 조언을 제공하였고, 2015년도부터 진행된 은행의 소비자 금융 전략 변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당행이 직면한 제반 사안에 대해 조언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 사외이사 간담회 등을 잘 이끌 수 있으며, 은행장 등 경영진으로부터 업무 협조, 자료 제출 등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구성원

① 이사회 의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의 대표이사 은행장으로 2014년 10월 27일 최초 선임되었고, 2017년 10월 27일 3년 임기로 재선임되었습니다. 박진회 은행장은 2001년 7월 한국씨티은행 전신인 한미은행 기업금융본부장으로 영입된 후, 재무담당부행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 한국씨티은행으로의 합병 후에는 경영지원그룹장으로 합병 통합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07년부터 기업금융그룹장을 역임하는 등 은행의 주요 부서를 이끌어 왔습니다. 2014년 은행장 취임 후에는 민원제로 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 거래 확대, 수준 높은 자산관리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비자금융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은행의 장기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이사회 의장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② 이사 프란시스코 아리스떼기에따

한국씨티은행의 비상임이사이며 현재 씨티그룹 아시아 태평양지역 최고경영책임자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07년부터 씨티그룹 안데스 지역 최고경영책임자, 2012년부터는 씨티그룹 라틴아메리카 지역 최고경영책임자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보수위원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③ 이사 피유쉬 아그라왈

한국씨티은행의 비상임이사이며 현재 씨티그룹 아시아 태평양지역 리스크관리 최고책임자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아그라왈 이사는 2010년부터 씨티은행 뭄바이의 리스크관리 최고책임자, 2013년부터는 씨티그룹 뉴욕 최고행정책임자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④ 이사 김경호

은행의 사외이사이며, 홍익대학교 부총장 및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5년 3월 27일 최초 선임, 2017년 3월 30일 재선임되었으며, 현 임기는 2018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김경호 사외이사는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재정통계자문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회계 전문가입니다. 2016년도 및 2017년도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회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감사 업무 운영에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선임 사외이사로서 은행의 미래 금융 전략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경영 전략 및 윤리 문화 등 은행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제공하며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⑤ 이사 한상용

은행의 사외이사이며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명예교수입니다. 2016년 3월 30일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8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한상용 사외이사는 IBM 미국 본사에서 10여년 간 연구원으로 재직 후 1995년부터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직, 프로그램심의조정위

원회 위원장, 한국소프트웨어 감정평가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등 IT 분야와 관계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였고, 디지털 금융과 관련하여 은행에 귀중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원 및 경영진에 대한 보수체계 전반에 관한 적극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계시며, 이 밖에도 이사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⑥ 이사 안병찬

은행의 사외이사이며 현재 명지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6년 3월 30일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8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안병찬 사외이사는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후, 한국은행 조사부, 자금부, 미국 워싱턴주재원을 거쳐 한국은행 국제국장을 역임하였으며, 2011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KB 투자증권의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은행 업무에 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며,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⑦ 이사 이미현

은행의 사외이사이며,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7년 3월 30일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9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이미현 사외이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법조 경력을 거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금융법과 조세법 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⑧ 이사 한상만 (2017. 3. 30. 임기만료 퇴임)

은행의 사외이사이며,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2년 3월 30일 최초 선임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한국마케팅연구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소비자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2017년 3월 30일 임기만료 전까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3) 요약 (2017. 12. 31.자 기준)

성명	상임/ 비상임/ 사외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박진회	상임	은행장 이사회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02. 한미은행 부행장 04.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그룹 수석부행장 11. 한국씨티금융지주 기업금융 그룹 부사장 14. 한국씨티은행 은행장(현)	‘14.10.27.	‘20.10.27.	3년 2개월	임추위
프란시스코 아리스떼 기에따	비상임	-	07. 씨티그룹 안데스 지역 최고 경영자 12. 씨티그룹 라틴아메리카지역 최고경영자 15. 씨티그룹 아시아-태평양지 역 최고경영자(현)	‘15.10.16.	‘18.10.16.	2년 2개월	보수위 임추위
피유쉬 아그라왈	비상임	-	10. 씨티은행 뭄바이, 리스크관 리최고책임자 13. 씨티그룹 뉴욕 최고행정책 임자 15. 씨티그룹 아태지역 리스크 관리최고책임자(현)	‘15.10.16.	‘18.10.16.	2년 2개월	리스크
김경호	사외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91.~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현) 09.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12. 재정통계자문위원회 위원 13.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15.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현)	‘15.03.27.	‘18.03.30.	2년 9개월	감사위 리스크 임추위
한상용	사외	보수위원회 위원장	95.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03.~10.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제1분과 위원장 06. 공정거래위원회 자문 위원 17.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명예교수 16.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현)	‘16.03.30.	‘18.03.30.	1년 9개월	감사위 리스크 임추위 보수위

성명	상임/ 비상임/ 사외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안병찬	사외	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장	15.~ 명지대 객원교수(현) 77. 한국은행 입행 07.~10. 한국은행 국제국장 11.~14. KB 투자증권 상근감사위원 16.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현)	'16.03.30.	'18.03.30.	1년 9개월	감사위 리스크 임추위 보수위
이미현	사외	-	1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87.~13.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 호사 05.~10.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사외이사 17.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현)	'17.03.30.	'19.03.30.	9개월	감사위 리스크 임추위 보수위
한상만	사외	리스크관리 위원회위원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 원회 위원장	95.~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경 영전문대학원장(현) 94. 시라큐즈대학교 객원조교수 04.~06. MIT Sloan School 방문교수 12.~17.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	'12.03.30.	'17.03.30.	5년	운영위 감사위 리스크 사추위 감추위 보수위 임추위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7년에는 총 12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며, 모든 이사가 매우 활발히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가 상법 및 지배구조법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전체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90%로(사외이사 평균 참석률 100%) 은행의 업무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고, 특히 매 분기 정기 이사회인 경우 전체 이사 평균 참석률 96%로 은행의 중요한 경영 상황에 관하여 모든 이사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어 충분하고 내 실 있는 점검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이사회인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7 년 제 1 차 이사회: 2017.2.15.(수) 10:00- 11:40 [통지일: 2017.2.8.]

항목		이사 활동 내역							비고
1. 이사 성명		박진회	아리스떼기에따*	아그라왈**	한상만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6년 4/4 분기 및 2016년 한국씨티은행 영업실적 보고		해당사항 없음							
나. 경영지원 용역 비용 집행 보고		해당사항 없음							
다. 2016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해당사항 없음							
라. 2016년 내부 및 감독기관 검사 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마. 이사회부속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변경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리스크관리 기준 개정 승인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내부통제기준 개정 승인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 신청 승인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기부금 지급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16년 영업보고서, 재무제표, 동 부속명세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비상임이사 프란시스코 아리스떼기에따(이하 같음)

**비상임이사 피유쉬 아그라왈(이하 같음)

1) 리스크관리조직 변경 사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무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추가 개정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중 당행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3)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권 외 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기초자산을 상품(commodities)으로 한정) 인가 신청에 관한 승인

4) 상법에 의거 정기주주총회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 결산안을 제출하기 위한 결산 이사회임.

2017년 제2차 이사회: 2017.3.8.(수) 15:25- 16:00 [통지일: 2017.3.3.]

항목	이사 활동 내역							비고
1. 이사 성명	박진회	아리스떼기에따	아그라왈	한상만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 업무 보고		해당사항 없음						
나. 2016 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7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정관 변경(안) 제의 승인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이사 보수한도 제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최고재무책임자 선임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2016. 8. 1.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함.

2) 김정원 최고재무책임자(재무기획그룹장)를 선임함.

2017 년 제 3 차 이사회: 2017.3.27.(월) 08:30- 9:00 [통지일: 2017.3.26.]

항목		이사 활동 내역							비고	
1. 이사 성명		박진회	아리스떼기에따	아그라왈	한상만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차세대 소비자 금융전략 보고 1)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	-	-	-	-	-		

비고

1) 차세대 소비자 금융전략과 이에 대한 언론사 및 대내외 발표 내용을 보고함.

2017 년 제 4 차 이사회: 2017.3.30.(목) 16:00- 17:00 [통지일: 2017.3.23.]

항목		이사 활동 내역							비고
1. 이사 성명		박진회	아리스떼기 에따	아그 라왈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불참 (출장)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사외이사 연수/교육 프로그램 보고		해당사항 없음							
나. 집행간부 변동 보고		해당사항 없음							
다. 채권시장안정펀드 관련 경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¹⁾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지배구조 관련 위원회 폐지 및 내부규정 개정 승인 ²⁾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이사회 부속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이사회 및 이사회 부속위원회 연간계획 및 사외이사 활동 목표 시간 승인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17년 경영계획 업데이트 및 중기계획 승인 ³⁾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기부금 지급 승인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박진회 은행장(대표이사)을 이사회 의장으로, 김경호 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함.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폐지 및 관련 규정을 폐지함.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사외이사 운영규정, 경영승계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개정함.

3) 차세대 소비자 금융전략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2016년도 12월에 승인한 2017년도 경영계획을 수정함.

2017년 제5차 이사회: 2017.6.2.(금) 16:30- 17:30 [통지일: 2017.5.26.]

항목	이사 활동 내역								비고
1. 이사 성명	박진회	아리스떼기 에따	아그 라왈	김 경 호	한 상 용	안 병 찬	이 미 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 석	참석	참석	참 석	참 석	참 석	참 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년 1분기 영업실적 및 타행비교 보고		해당사항 없음							
나.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연례 실태 점검		해당사항 없음							

	보고		
	다. 2016 년 재산상 이익제공현황 및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 1)	해당사항 없음	
	라. 이사회부속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해당사항 없음	
	마. 소비자금융 개편 진행상황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계열사 간 거래 승인2)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가결

비고

1) 은행업 감독규정 제 19 조에 따른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사후 보고

2) 상법 제 398 조에 따른 은행과 주요주주 및 그 자회사, 손자회사와의 거래 검토 및 승인

2017 년 제 6 차 이사회: 2017.7.3.(월) 15:30- 16:00 [통지일: 2017.6.27.]

항목		이사 활동 내역							비고
1. 이사 성명		박진회	아리스떼기에따	아그라왈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불참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CCS 주식매각계약 체결 승인의 건 ¹⁾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기준 승인 ²⁾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이사회는 당행이 보유한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 주식의 100%를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에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을 승인함.

2) 당행 체크카드 고객에 대하여 이사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관하여 이사회가 사전 승인함.

2017 년 제 7 차 이사회: 2017.8.24.(목) 16:10- 17:20 [통지일: 2017.8.17.]

항목		이사 활동 내역							비고
1. 이사 성명	박 진 회	아리스떼기 에따	아그 라왈	김 경 호	한 상 용	안 병 찬	이 미 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 석	참석	참석	참 석	참 석	참 석	참 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 년 2 분기 영업실적 및 타행비교 보고		해당사항 없음							

나. RFI 진행상황 보고 1)	해당사항 없음							
다. 한국씨티은행 Windows 2003 서버 보안대책 및 전환계획	해당사항 없음							
라. 한국씨티은행 공급업체관리 보고	해당사항 없음							
마. 집행간부 변동 보고	해당사항 없음							
바. 이사회부속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기준 개정 승인의 건2)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가 결
나. 기준일 설정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가 결

비고

1) 대주주감사팀의 Franchise Governance Review 검사에 관한 진행 상황 보고

2) 재산상 이익 제공을 위한 이사회 사전 의결 및 사후 보고에 대한 기준 개정

2017 년 제 8 차 이사회: 2017.9.11.(월) 9:30- 9:40 [통지일: 2017.9.8.]

항목	이사 활동 내역								비 고
1. 이사 성명	박 진 회	아리스떼 기에따	아그 라왈	김 경 호	한 상 용	안 병 찬	이 미 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 석	불참	참석	참 석	참 석	참 석	참 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CCS (개정)주식매각계약 체결 승인의 건 ¹⁾	찬 성	불참	찬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가 결	

비고

1) 2017. 7. 3.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 상 매수인 구성의 변경에 대한 수정 계약서를 승인함

2017 년 제 9 차 이사회: 2017. 10. 25. (수) 14:00- 14:20 [통지일: 2017.10.18.]

항목	이사 활동 내역								비 고
1. 이사 성명	박 진 회	아리스떼 기에따	아그 라왈	김 경 호	한 상 용	안 병 찬	이 미 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 석	불참	참석	참 석	참 석	참 석	참 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기부금 지급 승인	찬 성	불 참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가결

2017 년 제 10 차 이사회: 2017. 10. 27. (금) 17:30- 17:50 [통지일: 2017.10.18.]

항목		이사 활동 내역							비고
1. 이사 성명		박진회	아리스떼기에따	아그라왈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불참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은행장(대표이사) 선임 ¹⁾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²⁾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2017. 10. 27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박진회 이사를 임기 3 년의 (주)한국씨티은행 은행장(대표이사)으로 재선임함.
2) 박진회 은행장(대표이사)을 이사회 의장으로, 김경호 선임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재선임함.

2017 년 제 11 차 이사회: 2017. 11. 22. (수) 16:00- 17:00 [통지일: 2017.11.15.]

항목	이사 활동 내역							비고
1. 이사 성명	박진회	아리스떼기에따	아그라왈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년 3분기 영업실적 및 타행비교 보고		해당사항 없음						
나. 이사회 결의사항 집행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다. 이사회부속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계열사 간 거래 승인 ¹⁾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금융채 발행 한도 승인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상법 제 398 조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자회사들과의 거래 승인

2017 년 제 12 차 이사회: 2017. 12. 14. (목) 15:15- 16:00 [통지일: 2017.12.8.]

항목		이사 활동 내역							비고
1. 이사 성명		박진회	아리스떼기에따	아그라왈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보고		해당사항 없음							
나.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연례 점검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8년 국내회계기준 한국씨티은행 경영계획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내부통제기준 개정 승인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2018. 1. 1.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반영하여 내부통제기준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함.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은행은 이사회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사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매년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여도, 전문성 등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의 구성·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소집 절차 및 안건 제공 수준, 이사회 개최 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적시성 등을 사외이사의 자기평가, 이사의 상호평가, 임직원 평가에 의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은행은 이사회회의 구성원인 각 이사들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부속위원회의 출석률 및 이사회 및 이사회부속위원회의 활동내역 평가를 통해 이사회가 업무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 전문성을 갖춘 자를 이사로 선임하여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을 이끌고, 선관 의무, 감시의무, 이사회출석의무, 충실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이사들 및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비공개 서면조사로 이루어지며, 평가점수는 5점 만점기준으로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한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은행은 2017년 3월 30일 은행장 박진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 경우 선임 사외이사를 두도록 한 정관 제24조,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김경호 사외이사를 선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당행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가 아닌 박진회 은행장을 선임한 이유는, 은행장은 은행의 현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자이므로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소집 및 운영에 있어 이사회 지원 부서를 통해 상시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이사회 구성원들이 요청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사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행은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와 관련한 선임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이사회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제정, 2017년 3월 30일 동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3월 30일 이사회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하고 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사회 부속위원회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첫째, 은행장 후보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앞 추천, 은행장의 자격요건의 설정, 은행장 후보자 발굴에 관한 사항, 은행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를 통해 최적의 후보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은행장 후보자의 발굴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 은행 경영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지원합니다.

둘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하고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내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자격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 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은행의 감사 업무를 효율적이고 심도깊게 수행할 감사위원을 주주총회 앞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인 66%를 사외이사로 선임 하였습니다. 2017년 중 한상만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새로이 이미현 사외이사가 동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17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2017년 12월 31일 기준)

사외이사명	상임/사외/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경호	사외이사	임추위 위원장	2015.3.27.	2018.3.30
박진회	상임이사	대표이사	2014.10.27.	2020.10.27.
프란시스코 아리스떼기에따	비상임이사	임추위 위원	2015.10.16.	2018.10.16.
한상용	사외이사	임추위 위원	2016.3.30.	2018.3.30
안병찬	사외이사	임추위 위원	2016.3.30.	2018.3.30
이미현	사외이사	임추위 위원	2017.3.30.	2019.3.30.
한상만	사외이사	(전)임추위 위원장	2012.3.30.	2017.3.30.

<참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2017년 3월 30일 폐지됨, 2017년 3월 30일 기준)

사외이사명	상임/사외/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한상만	사외이사	사추위 위원장	2012.3.30.	2017.3.30.
김경호	사외이사	사추위 위원	2015.3.27.	2018.3.30.
한상용	사외이사	사추위 위원	2016.3.30.	2018.3.30.
안병찬	사외이사	사추위 위원	2016.3.30.	2018.3.30.
박진회	상임이사	대표이사	2014.10.27.	2020.10.27.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2017년 3월 30일 폐지됨, 2017년 3월 30일 기준)

사외이사명	상임/사외/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경호	사외이사	감추위 위원장	2015.3.27.	2018.3.30.
한상만	사외이사	감추위 위원	2012.3.30.	2017.3.30.
한상용	사외이사	감추위 위원	2016.3.30.	2018.3.30.
안병찬	사외이사	감추위 위원	2016.3.30.	2018.3.30.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가) 은행장(대표이사) 후보 자격요건

은행장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경영승계규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 2)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추고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 3)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 역량을 갖추고, 씨티그룹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자

(나) 사외이사 후보 자격요건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6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역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은행의 사외이사를 할 수 없으며, 당행 정관 제20조의2 및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5조에서는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 후보 자격요건

감사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동법 제6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역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배구조법 제1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당행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경호 감사위원이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 전문가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가) 은행장(대표이사) 후보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은행장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핵심인재 검토(Talent Review) 프로세스를 통해 후보자를 발굴·관리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는 그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경영승계규정 제6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4조, 이사회규정 제8조 제2항제4호 마목).

경영 승계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장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경영승계규정,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한 후 은행장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위원회는 은행장 후보자 발굴 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추천을 적극 활용하고, 외부 자문기관 등 은행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4조).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은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8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며,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정관 등 내규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사외이사 선임심사표”를 통해 검증합니다. 위원회가 현재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는 최종적으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됩니다.

정관 제20조의2 및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5조에서는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30일 이사회에서는 지배구조법의 취지 및 소극적/적극적 요건을 반영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내

부규범, 사외이사 운영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 감사위원 후보 추천

은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 제2항에서 감사위원 후보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후보자는 먼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검증된 사외이사 후보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감사위원후보를 추천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와 같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가) 은행장(대표이사)의 업무수행 평가 방식

씨티그룹 핵심인재 관리(Talent Review) 프로세스에 따라 은행장 후보군으로 관리되는 임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은 다음과 같은 씨티그룹 리더십 표준에 따라 평가 및 개발됩니다.

- 1) 인재개발: 실력주의 및 투명한 문화를 형성하고, 탁월한 성과, 이니셔티브 및 용기를 바탕으로 씨티를 위한 인재를 발굴하고 팀을 이끌어간다.
- 2) 고객 가치 전달: 고객, 회사, 정부 및 지역 사회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거두고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도록 한다.
- 3) 파트너로서 협력: 회사에 협력적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이 씨티 및 우리의 고객을 위해 최고 결과를 성취하도록 격려한다.
- 4) 발전을 위한 노력: 씨티의 비전 및 글로벌 전략을 지원하면서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루고, 진전을 위해 격려하고, 변화를 포용하고 현 상태의 문제를 해결한다.

5) 씨티 가치의 실천: 성과를 도출하고 장/단기 위험의 균형을 맞추면서 책임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장한다.

6) 결과 도출: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명확한 경로를 형성하여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 목표를 달성한다.

(나)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행은 매년 초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그 활동내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은 ①자기평가(사외이사 전원에 의한 본인 평가), ②상호평가(재적 이사 전원에 의한 상호 평가), ③직원평가(이사회 지원 담당 부서 임직원 및 주요 의안 제출 담당 임직원 에 의한 평가) 3개 방법으로 아래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합니다.

1)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평가: ①은행의 전략에 관한 이해도, ② 은행 의사결정과정, 집행과정,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 ③독립성 및 경영진 업무 집행에 대한 적절한 견제 기능의 수행, ④이해 상충 방지 등 사외이사로서의 윤리의식과 품위 유지, ⑤금융산업 관련 지식의 전문성

2) 이사회 참여에 관한 평가: ①출석률, ②토론 참여 자세

3) 이사회의 효율성/전문성에 관한 평가: ①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②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한 의사결정, ③ 의사록 검토 및 이사회 사후 이행 상황 확인 여부

(다) 감사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행은 감사위원의 감사업무 독립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 업무수행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매년 초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을 평가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활동내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평가에 관하여는 위 (나)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 방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7년 9월 2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1일 검토한 은행장경영승계계획을 바탕으로 은행장 후보군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박진회 이사를 은행장 후보로 추천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은행장 후보 추천에 있어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경영승계규정, 이사회규정상 후보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였습니다.

한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되기 전 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17년 3월 8일 연임 사외이사 1인(후보 김경호) 및 신임 사외이사 1인(후보 이미현)에 대해 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7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7. 9. 22.(금) 16:00 – 16:20 [통지일: 2017.9.15.]

항목	이사 활동 내역						비고
1. 이사 성명	박진회	아리스떼 기에따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불참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은행장 후보 추천						가결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박진회 은행장의 경우 은행장 본인의 은행장 후보 추천건으로 불참함.

2017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7.3.8.(수) 14:00 – 14:10 [통지일: 2017.3.3]**

항목	이사 활동 내역						비고
1. 이사 성명	박진회	한상만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김경호 사외이사 후보추천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나. 이미현 사외이사 후보추천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김경호 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본인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건으로 가부결정에 대한 의결권 제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17. 3. 30. 폐지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되었음.

2017년 제1차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2017.3.8(수) 14:10 – 14:15 [통지일: 2017.3.3.]**

항목	이사 활동 내역				비고
1. 이사 성명	한상만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김경호 감사위원 후보추천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나. 이미현 감사위원 후보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김경호 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본인의 감사위원 후보 추천 권으로 가부결정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17. 3. 30. 폐지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되었음.

(3) 평가

당행은 매년 초 이사회에서 실시하는 사외이사 평가를 통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속위원회 활동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후보자 성명: 박진회

2) 출생연도: 1957년 9월

3) 출신학교:

- 1984 런던 정경대(LSE) 대학원 경제학 석사(MSc)
- 1983 시카고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졸업
- 1980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1976 경기고등학교 졸업

4) 경력:

- 2014.10. ~ 현재 (주)한국씨티은행 은행장(현)
- 2007.01. ~ 2014.10. (주)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 기업금융그룹장
- 2004.11. ~ 2007.01. (주)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 경영지원그룹장
- 2002.03. ~ 2004.10. 한미은행 재무담당 부행장
- 2001.07. ~ 2002.03. 한미은행 기업금융본부장
- 2000.04. ~ 2001.06. 삼성증권 운용사업부담당 상무

- 1995.04. ~ 2000.04. 씨티은행 자금담당 본부장(Country Treasurer)
- 1993.04. ~ 1995.04. 씨티은행 Head of Global Finance Treasury
- 1990.11. ~ 1993.04. 씨티은행 Head of Treasury Marketing
- 1987.02. ~ 1990.11. 씨티은행 Chief Dealer
- 1984.10. ~ 1987.01. 씨티은행 Treasury Marketing Officer
- 1984. 10. 씨티은행 서울지점 입행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참석 위원 전원: 김경호 사외이사, 한상용 사외이사, 안병찬 사외이사, 이미현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에 관한 자세한 인적사항은 2. 이사회, 나. 구성(이사), (3)요약 부분을 참조.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 제안자는 전원 (주)한국씨티은행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 및 경영승계규정 제2조에 따라 위원회는 2016년 12월 1일 씨티그룹 핵심인재 관리 프로세스와 지배구조법에 따른 은행장의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현 은행장인 박진회 외에 유명순 기업금융그룹장과 브렌단카니 소비자금융 그룹장을 새로운 은행장 후보군으로 발굴하고 경영승계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상기 세 후보 모두 씨티그룹의 핵심인재 관리 절차에 따라 승계 후보자로 선발되어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그 경력이 관리되고 있었으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유명순 수석부행장과 브렌단카니 수석부행장의 경우에는 은행장으로서의 리더십과 업무역량을 아직 쌓아가고 있는 후보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임기 동안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배구조법 및 당행 내규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박진회 현 은행장을 후보로 최종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17년 9월 22일 개최)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평가: 은행장 후보자 박진회는 상기 결격요건에 해당사항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 요건: 은행장은, 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②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추고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 역량을 갖추고 씨티그룹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함 (경영승계규정 제5조).

- 평가: 상기 후보자는 30년 이상의 금융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갖추었으며, 지난 재임 기간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은행의 윤리·문화의식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를 진행하고 민원 제로 캠페인을 시행하여 고객 만족과 금융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재임기간 중 노사관계 및 대직원 관계에 있어서 일관된 메시지와 태도로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였으며,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 거래 확대, 수준 높은 자산관리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비자금융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은행의 장기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은행이 정한 위 3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본인 소명

지배구조법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서 및 은행과의 관계에 관한 본인 확인

서를 징구하여 2017년 10월 27일 금융감독원에 선임 보고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참석 위원 전원은, 박진회 은행장 후보에 대하여 임기 중 은행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강한 리더쉽과 추진력을 보여 주었고, 은행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열정을 가지고 은행 임직원들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한국 은행을 비롯한 금융 당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시키고, 지배구조법과 은행 내부 규정에서 제시하는 모든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상기 후보자를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주주총회 앞에 추천하였습니다.

(2) 대표집행임원 후보

당행은 상법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두고 있지 않음.

(3) 감사위원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후보자 김경호, 이미현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은,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 사항, (4)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을 참조.

(나) 후보 제안자

후보자 김경호, 이미현 추천 시 '후보 제안자'에 관한 사항은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 사항, (4) 사외이사 후보, (나) 후보자 제안자'를 참조.

(다) 후보 추천 사유

후보자 김경호, 이미현 추천 시 '후보자 추천 사유'에 관한 사항은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 사항, (4) 사외이사 후보, (다)

후보자 추천 사유'를 참조.

(라) 자격요건 충족 여부

후보자 김경호, 이미현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감사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 충족 관련 사항은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 사항, (4) 사외이사 후보,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후보자 김경호, 이미현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추천을 위하여 2017년 3월 8일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2017년 3월 30일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폐지되고 현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되었음)가 개최되었으며, 이미 앞서 열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그 전문성과 윤리성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였으므로 이에 다른 의견 없이 위 2인에 대한 주주총회 앞 감사위원후보 추천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4)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 김경호

- 1) 성명: 김경호
- 2) 출생연도: 1954년 12월
- 3) 출신학교:
 - 1987. 퍼듀대학교 경영학 박사(회계학)
 - 1983. 퍼듀대학교 경영학 석사
 - 1977.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학사
 - 1973. 경기고등학교 졸업

4) 경력

- 2017.2. ~ 현재 홍익대학교 부총장(현)
- 2015. 3. ~ 현재 (주)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현)
- 1991.8. ~ 현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현)
- 2009.3.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기획재정부)
- 2013.11.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행정자치부)
- 2014.4.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 2009.3.-2011.2.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장
- 2004.5.-2010.6. (주)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 2001.1.-2003.1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 1987.8.-1991.8. 캘리포니아 주립 L.A.대 조교수

5) 사외이사 경력

김경호 후보자는 2015년 3월 3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당행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래 2017년 3월 30일 1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김경호 이사는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행의 효율적인 감사 업무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씨티그룹이 제공하는 여러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선임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와 원활한 진행을 돕고, 소비자금융 모델 개편에 있어서 은행의 전략을 지지하고 경영 전략에 관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2017년도 중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의 참석률은 모두 100%입니다.

■ 이미현

1) 성명: 이미현

2) 출생연도: 1961년 1월

3) 출신학교:

- 1994. 하버드 로스쿨 LL.M.
- 1985. 사법연수원
- 1983.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76. 상명여자고등학교 졸업

4) 경력

- 2017.2. ~현재 (주)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현)
- 2013. ~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 2014. 국세예규심사위원회(기획재정부)
- 2008.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기획재정부)
- 2009. ~ 2011.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2009. ~ 2011. 국세청 법률고문
- 2004. ~ 2013.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 2005. ~ 2010.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사외이사
- 2003. ~ 2005.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2002. ~ 2006.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1987. ~ 2013.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5) 사외이사 경력

이미현 사외이사는 2017년 3월 30일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래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출석률은 100%, 감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의 출석률은 각 80%, 75%, 80% 입니다.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김경호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

① 최초선임 시: 박준 전 사외이사(후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 1977. ~ 1979. 사법연수원 제9기
- 1979. ~ 1982. 군법무관
- 1988. ~ 1989. 미국 Sullivan & Cromwell 법률사무소
- 1982. ~ 2007. 김&장 법률사무소
- 2008. 3. ~ 2010. 3. 前 (주)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
- 2010. 6. ~ 2013. 3. 前 (주)한국씨티금융지주 사외이사

- 2011. 3. ~ 2013. 3. 前 (주)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
- 2007. ~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② 재선임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017년 3월 30일 이후 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인적사항에 관하여는 2. 이사회, 나. 구성, (3) 요약 및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나. 구성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현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 박진회 (후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 2001. ~ 2002. 한미은행 기업금융본부장
- 2002. ~ 2004. 한미은행 재무담당 부행장
- 2004. ~ 2007.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 경영지원그룹장
- 2007. ~ 2014.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 기업금융그룹장
- 2011. ~ 2014. 한국씨티금융지주 기업금융그룹 부사장
- 2014년 ~ 현재 한국씨티은행 은행장(현)

2) 후보자와의 관계

■ 김경호 사외이사

김경호 사외이사의 최초 선임 당시 추천자인 박준 전 사외이사는 후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김경호 사외이사의 재선임 당시에는 함께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이 후보 추천을 하였습니다.

■ 이미현 사외이사 후보

이미현 사외이사는 2017년 3월 30일 최초 선임 당시 박진회 은행장이 추천하였습니다. 박진회 은행장은 후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동 후보자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사외이사 후보자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 김경호 사외이사

김경호 사외이사 후보는 최초 선임 당시,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회계 분야에 있어 최고 전문가로서 여러 학회 활동 및 정부부처의 회계 자문에도 참여하고 있고, 타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경력도 보유하고 있어 전문성 및 경륜 등의 측면에서 은행의 사외이사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2017년 재선임 당시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은행의 감사 업무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은행의 미래 금융 전략 변경에 여러 조언을 제공하여 은행의 건전 경영과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김경호 사외이사를 임기 1년의 연임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 이미현 사외이사

이미현 사외이사는 금융 법률 및 조세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나날이 변화하는 금융 규제 환경에 대하여 은행에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여성으로서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 금융발전심의위원회와 하나은행 사외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은행업에 대한 공공적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박진회 은행장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김경호 사외이사는 2017년 재선임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았으며, 이미현 신임 사외이사는 박진회 은행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최종적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주총회 앞 추천되었습니다.

특히, 이미현 신임 사외이사는 2017년 1월 17일 개최된 제1차 사외이사 후보추천간담회부터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되어, 이후 2017년 2월 2일, 2017년 2월 23일 총 3차에 거친 간담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2017년 3월 8

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김경호, 이미현 사외이사 후보자 모두 아래와 같습니다.

①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나)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평가

김경호, 이미현 사외이사 후보 모두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내규에서 정한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행은 정관 제20조의2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2항,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충실성에 관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금융경험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위한 간담회에서 은행에 필요한 분야를 확정하고 본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를 추천합니다.

김경호, 이미현 사외이사 후보는 모두 당행 내규에 따라 금융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판단되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 당행 정관 제20조의2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2항,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충실성에 관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하여야 합니다.

- 김경호 후보자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미현 후보자는 금융 법령과 조세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임원후보 추천관련사항, (4)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부분에서 서술한 상გი력 및 추천사유를 볼 때,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전문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동 후보자들은 위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은행 이사회의 충실한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 당행 정관 제20조의2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2항,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충실성에 관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모두 선임 시점뿐만 아니라 재선임 시점에도 당행과의 거래관계가 없으며, 타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지도 않아 이해상충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칠 사유가 없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 당행 정관 제20조의2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2항,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충실성에 관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위 김경호, 이미현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경륜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였을 때 독립적인 사외이사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은행,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윤리성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동 후보자들은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 충실성

- 당행 정관 제20조의2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2항,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충실성”에 관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매년 초 이사회에서 실시하는 사외이사 평가에서는 이사회 참여도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재선임 대상인 김경호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회 참석률이 100%이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미현 사외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논의한 바, 주변인들의 추천 및 재직 중인 기관에서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현 후보자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제 공시대상기간인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사외이사들의 평균 참석률은 98%로 특히 이사회 참석률은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4) 본인 소명

위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모두 1) 최근 2년 이내에 재직한 법인 중 법령

상 금지되는 회사나 기관 등에 근무한 바 없고, 2) 이해상충이 발생할 만한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3) 지배구조법 등 기타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해당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행은 사외이사 선임시 본인 확인 및 서명을 거친 결격사유 확인서를 통해 관련 자격 여부 등의 확인을 거치고 있으며, 사외이사와 위촉계약서를 맺어 사외이사로서의 이사회 등의 성실한 참여, 비밀유지 등 의무와 자료제출 요구 등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상기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후보 추천을 위해 2017년 3월 8일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및 내규 상의 소극적 및 적극적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각각 전원의 찬성으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2017년에 재선임 된 사외이사는 상기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 사항, (4) 사외이사 후보, (다) 후보자 추천 사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간담회 및 은행 직원 등을 상대로 한 전문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던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17년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2명이었으며 이중 1명이 연임하였으며 내/외부 평가 결과 연임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사외이사 평가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 등 출석률 ¹⁾	평가여부
김경호	2015.3.27.~ 2017.3.30.	연임	100%	자격요건 충족

1) 2016.1.1~2016.12.31 이사회 및 이사회부속위원회 출석률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재선임 대상 김경호 사외이사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씨티그룹에서 제공하는 여러 교육 및 연수를 이수하였고, 평상시에도 은행의 전략과 발전 방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은행의 경영 전반에 관한 폭넓은 조연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경호 사외이사는 2017년 3월 재선임 당시 은행법 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0. 사외이사 검토보고서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한국씨티은행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후보군을 관리하고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①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천 받는데 있어 당행은 우선적으로 현 이사회의 구성 및 향후 영업 전략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1)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지 분야를 확정하고, 2)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전문가들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 또는 당행 임직원으로부터 추천 받아 후보군을 조성합니다. 이사회 지원부서인 법무지원부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물망에 오른 후보군을 관리하고 그 이력 및 자격요건을 실무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②후보자 추천: 3~4차례에 걸친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위한 간담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성과 윤리성,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각 분야별 후보자를 압축한 후 최종적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주주총회 앞 추천하게 됩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한국씨티은행은 전문성과 윤리성, 다양성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7일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위한 1차 간담회에서는 전문 분야별로 IT 분야 1명, 경제 및 경영분야 5명, 법률 분야 3명으로 후보군을 상정한 다음, 경제 및 경영분야 또는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모시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2일 개최된 2차 간담회에서는 앞서 논의된 2개 분야에서 총 3분의 후보자를 압축하였습니다. 2017년 2월 23일 개최된 3차 간담회에서는 최종 후보자를 2인을 선발한 후 최종 후보 2인에 대하여 은행장과 선임사외이사의 인터뷰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조언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법률 분야의 전문가인 이미현 사외이사 후보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로 상정하였습니다.

3) 후보군 현황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위한 제 1 차 간담회 결의(심의)일자: 2017. 1. 17.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및 경제 전반	5	56%	
법률	3	33%	
IT	1	11%	
기타	-	-	
합계	9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	-	
외부자문기관	-	-	
사외이사	4	45%	
전(前) 사외이사	2	22%	
지원부서(임직원) 및 기타	3	33%	
합계	9	100%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위한 제 2 차 간담회 결의(심의)일자: 2017. 2. 2.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	-------	-----	----

금융 및 경제 전반	2	50%	
법률	2	50%	
IT	-	-	
기타	-	-	
합계	4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	-	
외부자문기관	-	-	
사외이사	1	25%	
전(前) 사외이사	2	50%	
지원부서(임직원) 및 기타	1	25%	
합계	4	100%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위한 제 3 차 간담회 결의(심의)일자: 2017. 2. 23.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및 경제 전반	1	50%	
법률	1	50%	
IT	-	-	
기타	-	-	
합계	2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	-	
외부자문기관	-	-	
사외이사	1	50%	
전(前) 사외이사	-	-	
지원부서(임직원) 및 기타	1	50%	
합계	2	100%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외이사 전원 및 1인의 상임 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현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되었음)를 통하여 사외이사후보군을 관리하고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3) 후보군 현황' 참조

(가)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사외이사 지원부서인 법무지원부는 총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등이 추천한 후보군을 관리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이를 보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3) 후보군 현황' 참조

(5)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해당사항 없음.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이사회 활동 내역은 '2. 이사회 다. 활동내역 (2) 회의 개최내역'을 참조.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활동 내역은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라. 활동내역 및 평가 (2) 회의 개최내역' 참고

(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은 '6. 감사위원회, 다. 활동내역 및 평가, (2) 회의 개최내역' 참고

(라)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활동 내역은 '7. 리스크관리위원회, 다. 활동내역 및 평가, (2) 회의 개최내역' 참고

(마) 보수위원회

보수위원회 활동 내역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3) 회의 개최내역' 참고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가) 사외이사 김경호

사외이사 김경호는 2017년 중 개최된 이사회 12회 중 12회 전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부속위원회의 경우, 감사위원회 8회 중 8회, 리스크관리위원회 5회 중 5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보수위원회 2

회 중 2회, 이사회운영위원회 1회 중 1회 참석하였습니다.

김경호 사외이사는 2017년 3월 30일부터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은행의 감사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임원후보 선임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각 씨티법인체들의 감사위원장과 전화 회의에 참석하고, 감사본부 및 은행의 대주주 감사팀과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당행의 감사업무에 관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내부통제강화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김경호 사외이사는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을 위하여 2017년 중 총 168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한상용

사외이사 한상용은 2017년 중 개최된 이사회 12회 중 12회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부속위원회의 경우, 감사위원회 8회 중 8회, 리스크관리위원회 5회 중 5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보수위원회 7회 중 7회 참석하였습니다. 한상용 사외이사는 IT 분야 전문가로서 당행의 디지털 금융 전략을 포함한 은행의 미래 금융 전략에 관한 토의에 활발히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5월에는 블록체인의 원리와 관련하여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 2. 15. 이사회에서는 당행의 경영 전략에 관하여 질문하고, 2017. 8. 24. 이사회에서는 소비자금융 모델 개편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 당행의 보수체계를 이해하고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성과 보수가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금액을 승인하였습니다. 한상용 사외이사는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을 위하여 2017년 중 총 164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안병찬

사외이사 안병찬은 2017년 중 개최된 이사회 12회 중 총 12회 전부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부속위원회의 경우, 감사위원회 8회 중 8회, 리스크관리위원회 5회 중 5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보수위원회 5회 중 5회를 참석하였습니다. 안병찬 사외이사는 중앙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의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및 리스크관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발휘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부속위원회 의

안 심의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리스크관리의 중점사항을 점검하고, 2017년 8월 24일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역위기상황분석에 관한 심도깊은 토론을 주도하였습니다. 안병찬 사외이사는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을 위하여 2017년 중 총 156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이미현

사외이사 이미현은 2017년 중 개최된 이사회 9회 중 총 9회 전부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부속위원회의 경우, 감사위원회 5회 중 4회, 리스크관리위원회 4회 중 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보수위원회 5회 중 4회를 참석하였습니다(부득이 학회 일정으로 인한 불참). 이미현 사외이사는 금융법 분야에 있어 풍부한 식견과 지식을 바탕으로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에 관하여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미현 사외이사는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을 위하여 2017년 중 총 102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마) 사외이사 한상만

사외이사 한상만은 2017년 중 개최된 이사회 3회 중 3회 전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부속위원회의 경우, 감사위원회 3회 중 3회, 리스크관리위원회 1회 중 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보수위원회 2회 중 2회, 이사회운영위원회 1회 중 1회 참석하였습니다. 한상만 사외이사는 2017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을 위하여 총 54시간을 사용하였으며, 2017년 3월 30일 임기만료 퇴임하였습니다.

(바) 요약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시간 실적 (단위:시간)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감사위원 후보추천 위원회		임원 후보추천 위원회		보수위원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실적
김경호	12	12	8	8	5	5	1	1	1	1	1	1	2	2	1	1	168

한상용	12	12	8	8	5	5	1	1	1	1	1	1	7	7	-	-	164
안병찬	12	12	8	8	5	5	1	1	1	1	1	1	5	5	-	-	156
이미현	9	9	5	4	4	3	-	-	-	-	1	1	5	4	-	-	102
한상만	3	3	3	3	1	1	1	1	1	1	-	-	2	2	1	1	54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한국씨티은행은 2015년 10월 8일까지 씨티그룹 소속 100여개국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임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2015년 10월 8일 당행을 포함한 한국 소재 씨티그룹 계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책임자 이상의 직원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며, 보상한도는 미화 10,000,000불입니다.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은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임원책임배상보험 가입 현황 및 보험계약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되는 보험사고(면책조항 포함)

1) 본 보험계약으로 보장하는 손해

피보험임원이 보험기간 이전 또는 보험기간 중에 행하거나, 시도하거나, 그렇다고 주장되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해당 임원을 상대로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의해 법률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피보험회사가 피보험임원을 위하여 보상하지 않는 경우 대신 지급함

2) 본 보험계약으로 보장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

- 이전 보험증권에서 담보하는 손해
- 소급일(씨티은행 증권인 경우 2015년 10월 8일) 이전에 행해진 부당행위로 인하거나, 해당일자 이전에 이전에 판결이 내려지거나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
- 정치단체, 관계사등에 제공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뇌물증여 또는 현금행위에 기인한 손해
- 피보험자간의 소송
- 직원 복지기금 및 연금의 신탁관리에 관련된 손해
- 신체상해 및 유형자산의 손상

- 오염물질의 누출
- 미국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소법 기타미국 및 캐나다내의 관련규정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거래
-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기, 고의적인 법규 위반
- 개인적 이득의 불법취득

[참고] 면책조항의 분리적용: 어떤 한 피보험임원에 관계된 사실이나 인지하고 있던 정보는 다른 피보험임원들에 대한 담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전가되지 아니함

(2) 보험금: 위 (1)에서 기재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한도는 미화 10,000,000불 (매손해당/보험기간중 총보상한도)임.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액은 인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 입니다.

(3) 보험료: 당행이 매 월 지급하는 보험료는 1,326,664원입니다.

[참고] 일시 납부된 보험료 KRW 15,919,967을 12개월로 배분한 금액임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한상만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최초 선임 일자	2012.3.30	2015.3.27	2016.3.30	2016.3.30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2017. 1. 11. (수) 12:00 ~ 13:00, 1 시간 내용: 사외이사 간담회 (감사본부 운영 관련)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2017. 2. 2. (목) 12:30 ~ 13:30, 1 시간 내용: 소비자비즈니스 구조개편 보고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다.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2017. 3. 14. (화), 1 시간 내용: 전(全) 씨티 계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집합 연수 (대상자: 김경호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불참 사유)	비대상	참석	비대상	비대상

라.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2017. 3. 16. (목) ~ 2017. 3. 18. (토), 30 시간 내용: 씨티 베트남 법인 소개, 베트남 내 한국 기업고객 담당업무 및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에 관한 교육 및 연수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2. 누적 교육 시간		82 시간 10 분	68 시간 05 분	41 시간 30 분
사외이사 성명 (2017. 3. 30. 주총일 이후)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최초 선임 일자		2015.3.27	2016.3.30	2016.3.30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2017. 4. 27. (목), 4 시간 30 분 내용: 씨티은행 개관, 기업금융 전략, 정보보안프레임워크, 디지털 전략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2017. 5. 25. (목), 4 시간 내용: 리스크 관리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다.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2017. 7. 3. (월), 3 시간 내용: WM 서울센터 방문 및 소비자금융 전략 논의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라.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2017. 8. 27. (화), 1 시간 30 분 내용: 2017 년 상반기 리버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논의 (대상자: 안병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불참 사유)	비대상	비대상	참석
마.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2017. 9. 28. (목), 2 시간 내용: 전(준) 씨티 계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집합 연수 (대상자: 김경호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불참 사유)	비대상	비대상	참석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불참 사유)	참석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바.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2017. 10. 17. (화), 3 시간 내용: 대주주감사팀과 이사회 및 당행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 (대상자: 김경호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불참 사유)	참석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사.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2017. 10. 18. (수), 3 시간 내용: 대주주감사팀과 이사회 및 당행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 (대상자: 안병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불참 사유)	비대상	비대상	참석	비대상
2. 누적 교육 시간		84 시간 35 분	53 시간	57 시간 30 분	11 시간 30 분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김경호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경호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당행은 매년 초 자격요건의 정기적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초 지배구조법에 따른 결격요건을 점검한 결과, 김경호 사외이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김경호 사외이사는 2015년 3월 27일 최초 선임된 이래 정관 20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충실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사외이사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회계학 박사이며,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재정통계자문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는 회계 전문가입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가.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정관 제 20 조의 2 제 2 항 해당)		
가. 전문성	충족	회계분야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활동중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의식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부속위원회의 적극적 활동

(2) 사외이사 한상용

(가) 소극적 자격요건

한상용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당행은 매년 초 자격요건의 정기적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초 지배구조법에 따른 결격요건을 점검한 결과, 한상용 사외이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한상용 사외이사는 2016년 3월 30일 최초 선임된 이래 정관 20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충실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상용 사외이사는 1995년부터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소프트웨어 감정평가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자문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는 IT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가.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정관 제 20 조의 2 제 2 항 해당)			
	가. 전문성	충족	IT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활동중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의식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부속위원회의 적극적 활동

(3) 사외이사 안병찬

(가) 소극적 자격요건

안병찬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당행은 매년 초 자격요건의 정기적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초 지배구조법에 따른 결격요건을 점검한 결과, 안병찬 사외이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안병찬 사외이사는 2016년 3월 30일 최초 선임된 이래 정관 20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충실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안병찬 사외이사는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후, 한국은행 조사부, 자금부, 미국 워싱턴주재원을 거쳐 한국은행 국제국장을 역임하였으며, 2011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KB 투자증권의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금융업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가.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정관 제 20 조의 2 제 2 항 해당)			
	가. 전문성	충족	경제분야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활동중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의식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부속위원회의 적극적 활동

(4) 사외이사 이미현

(가) 소극적 자격요건

이미현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당행은 매년 초 자격요건의 정기적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초 지배구조법에 따른 결격요건을 점검한 결과, 이미현 사외이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이미현 사외이사는 2017년 3월 30일 최초 선임된 이래 정관 20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충실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무법인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등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금융 관련 법령 및 조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가.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정관 제 20 조의 2 제 2 항 해당)		
가. 전문성	충족	법률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활동중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의식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부속위원회의 적극적

			활동
--	--	--	----

(5) 사외이사 한상만 (2017. 3. 30. 임기만료 퇴임)

(가) 소극적 자격요건

한상만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당행은 매년 초 자격요건의 정기적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한상만 사외이사는 2012년 3월 30일 최초 선임된 이래 정관 20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충실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마케팅연구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한국소비자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가.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정관 제 20 조의 2 제 2 항 해당)			
	가. 전문성	충족	경영분야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활동중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의식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부속위원회의 적극적 활동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사외이사 (최초선임일)	기부받은 비영리법인등		기부한 은행등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이사회 보고내역	선임 전 기부내역	취임 후 기부내역
한상만** (2012.3.30)	이화여자대학교	학교법인 (배우자)	한국씨티 은행	-	아래 *표 참조	'12 년: 1 건(25) '13 년: 1 건(28) '14 년: 1 건(26) '15 년: 1 건(24) '16 년: 1 건(24) '17 년: 1 건(24)
김경호 (2015.3.27)	해당사항 없음					
한상용 (2016.3.30)	해당사항 없음					
안병찬 (2016.3.30)	해당사항 없음					
이미현 (2017.3.30)	해당사항 없음					

* 씨티-이화 금융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한국씨티은행이 “직원의 참여(Participation)” 및 “장기적, 지속적 참여(Long-term Commitment)”라는 원칙하에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한상만 사외이사의 선임과는 무관하며, 기부금을 지급하기 전 관련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사전 보고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미국의 씨티재단(Citi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았으며, 2012년부터는 한국씨티은행에서 기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한상만 사외이사는 2017년 3월 30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한국씨티은행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활동을 평가하여, 사외이사 연임 판단 및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 운영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 ① **평가 주체:**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초에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심의·평가하던 이사회운영위원회가 2017년 3월 30일자로 폐지되고, 해당 기능은 이사회로 통합됨)
- ② **평가 기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 참여도(출석률 및 민주적 의사결정) 및 이사회 효율성/전문성에 대하여 자기평가와 상호평가, 직원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 결과는 1(수행하지 못함), 2(미흡함), 3(보통임), 4(우수함), 5(뛰어난 성과)로 나누어 평점을 매깁니다.
- ③ **평가 절차:** 평가기준에 따른 설문을 사외이사 자기평가, 상호평가 및 직원평가를 통해 산술 평균하여 산출합니다. 자기평가는 사외이사 본인이 하는 평가이며, 상호평가는 이사가 다른 사외이사에 대하여 하는 평가입니다. 직원평가에는 이사회를 주관하는 담당 임직원과 주요의안을 제출하는 임직원이 참여합니다.
-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당행의 사외이사 평가는 그 동안 설문 항목 변경, 평가 참여자 변경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사회의 심의 및 판단에 따라 사외이사 평가의 객관성 제고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상기 내부평가를 시행한 결과, 사외이사들 모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및 이사회 참여도, 이사회 효율성/전문성 전 부문에서 우수함(4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100%에 가까운 사외이사의 적극적 참여와 사외이사 위주의 이사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2) 사외이사 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김경호: 김경호 사외이사는 위 평가기준에 따라 전 부문에서 우수함(4 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사회를 비롯하여 3개의 부속

위원회(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감사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이사회의 효율적인 절차를 확립하였고, 회계와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서 은행의 감사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한상용: 한상용 사외이사는 위 평가기준에 따라 전 부문에서 우수함(4 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사회와 4개 부속위원회(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디지털 बैं킹과 관련하여 IT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안병찬: 안병찬 사외이사는 위 평가기준에 따라 전 부문에서 우수함(4 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사회를 비롯하여 이사회와 4개 부속위원회(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제 전문가로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논의를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로서 은행의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을 제기하여 보다 공고한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이미현: 이미현 사외이사는 위 평가기준에 따라 전 부문에서 우수함(4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사회를 비롯하여 이사회와 4개 부속위원회(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금융 법률 전문가로서 소비자금융 모델 개편과 관련하여 규제 준수와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행은 앞으로도 충실하고 균형있는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주제의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 외부평가

(가) 외부평가 개요

당행은 공시작성대상기간인 2017년 중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상기 (가) 참조.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선임사외이사는 김경호 이사입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를 대표하여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해 조언하고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주재, 경영진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 내 주요 부속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이사회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최종적인 협의와 조율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연간 계획 수립,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외부 특강, 사외이사 간담회 개최 등 전반적인 이사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 결정을 해야 할 경우 선임 사외이사의 조언을 선제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선임사외이사는 각 이사회 개최 시마다 원활한 이사회 진행 및 이사회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고 관련된 질문을 적절히 하여 경영진이 이사회 앞에 보다 자세하게 안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6월 2일 이사회 안건 중 계열사와의 거래 안건에 있어서는 보다 상세한 거래 내역이 적힌 안건 자료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여, 후속 이사회에서 건별로 승인할 사항을 이사회 앞에 제안하고, 은행의 전반적인 계열사 거래 관리 통제 절차에 대하여 2018년도 중 체계적인 보고를 다시 한 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법무지원부입니다. 지원부서의 역할은 이사회 등 자료의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한 지원, 선임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사외이사 연수 지원,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지원,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등이며, 2017년말 현재 법무본부장 포함 4명이 이사회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지원부는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의 충실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2017년도 중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씨티 베트남 지점과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및 LG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을 차례로 방문하여 베트남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기업 현황 및 대(對)아시아 기업 금융 전략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3월 16일~18일). 또한, 신임사외이사 연수(4월 27일)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5월 25일), WM 센터 방문 및 소비자금융전략 논의(7월 3일), 리버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논의(8월 27일), 대주주감사팀과 이사회 및 당행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의 시간(10월 17일~18일)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사외이사의 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김경호

(가) 재직기간

김경호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2015년 3월 27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2017년 3월 30일 연임)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75.1 백만원	
	기본금	75.1 백만원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연간 기본금의 1/12을 매월 지급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기타 수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차량제공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제공		해당사항 없음
	기타 편익제공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한상용

(가) 재직기간

한상용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2016년 3월 30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0.0 백만원	
	기본금	60.0 백만원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연간 기본급의 1/12을 매월 지급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기타 수당		해당사항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차량제공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제공		해당사항 없음

	기타 편익제공		해당사항 없음
--	---------	--	---------

(3) 사외이사 안병찬

(가) 재직기간

안병찬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2016년 3월 30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0.0 백만원	
	기본급	60.0 백만원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연간 기본급의 1/12을 매월 지급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기타 수당		해당사항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해당사항 없음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차량제공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제공		해당사항 없음
	기타 편익제공		해당사항 없음

(4) 사외이사 이미현

(가) 재직기간

이미현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2017년 3월 30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5.3백만원	
	기본급	45.3백만원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연간 기본급의 1/12을 매월 지급 (단, 2017년 3월 기본급은 일할계산함)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기타 수당		해당사항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차량제공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제공		해당사항 없음
	기타 편익제공		해당사항 없음

(5) 사외이사 한상만 (2017. 3. 30. 임기만료 퇴임)

(가) 재직기간

한상만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2012년 3월 30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2014년 3월 30일 연임, 2015년 3월 27일 연임, 2016년 3월 30일 연임)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19.8백만원	
	기본금	19.8백만원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연간 기본급의 1/12을 매월 지급 (단, 2017년 3월 기본급은 일할계산함)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기타 수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차량제공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제공		해당사항 없음
	기타 편익제공		해당사항 없음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4. 사외이사 활동 보수 등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는 당행 사외이사 전원 해당사항 없음.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위원회	직위	경력
박 준	'08.3.28.	'13.3.29.	60 개월	감사위(11.3월 ~ 13.3월) 리스크위(11.3월 ~ 13.3월) 감추위(11.3월 ~ 13.3월) 사추위 및 운영위(11.3월~13.3월)	리스크위원장('11. 3월 ~ ' 13.3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 수
김 성 은	'10.3.30.	'15.3.27.	60 개월	감사위(10.3월 ~ 15.3월) 리스크위(10.3월 ~ 15.3월) 감추위(10.3월 ~ 15.3월)	리스크위원장('13. 3월 ~ '15.3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위원회	직위	경력
				경발위(14.3월 ~ 15.3월) 사추위 및 운영위(13.3월~ 15.3월)		
권 오 규	`11.3.25.	`16.3.30.	60 개월	감사위(11.3월 ~ 16.3월) 리스크위(14.3월 ~ 16.3월) 감추위(11.3월 ~ 16.3월) 사추위(11.3월~ 16.3월) 운영위(11.3월~ 16.3월) 경발위(15.3월~16.3월) 임추위(15.3월~16.3월)	감사위원장('12.3월 ~ '16.3월) 감추위원장(11.3월 ~ 16.3월) 사추위원장('13.3월~'16.3월) 운영위원장('13.3월~'16.3월) 임추위원장('15.3월~'16.3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배 정 근	`11.3.25.	`16.3.30.	60 개월	감사위(11.3월 ~ 15.3월) 리스크위(11.3월 ~ 15.3월) 사추위(15.3월~16.3월) 감추위(11.3월 ~ 15.3월) 경발위(15.3월~16.3월) 임추위(15.3월~16.3월)	-	숙명여자대 학교 미디어 학부 교수
정 순 섭	`13.3.29.	`15.5.15.	26 개월	감사위(13.3월 ~ 15.3월) 리스크위(13.3월 ~ 15.3월) 사추위(15.3월~15.5월) 감추위(13.3월 ~ 15.5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 상 만	`12.3.30.	`17.3.30.	60 개월	운영위(15.3월~17.3월) 감사위(12.3월 ~ 17.3월) 리스크위(12.3월 ~ 17.3월) 사추위(14.11월~17.3월) 감추위(12.3월 ~ 17.3월) 보수위(14.11월 ~ 17.3월)	리스크위원장('16.3월~17.3월) 사추위위원장('16.3월~17.3월) 보수위위원장('16.9월~17.3월) 임추위위원장('16.9월~17.3월)	성균관대학 교 경영대학 교수
김 경 호	`15.3.27.	`18.3.30.	36 개월	감사위(15.3월~ 현재) 리스크위(15.3월~ 현재) 보수위(15.3월~ 17.3월) 임추위(16.3월~현재)	감사위위원장('16.3월~현재) 임추위위원장('17.3월~현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 상 용	`16.3.30.	`18.3.30.	24 개월	감사위(16.3월~ 현재) 리스크위(16.3월~ 현재) 임추위(16.3월~ 현재) 보수위(16.3월~ 현재)	보수위위원장('17.3월~현재)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안 병 찬	`16.3.30.	`18.3.30.	24 개월	감사위(16.3월~ 현재) 리스크위(16.3월~ 현재) 임추위(16.3월~ 현재) 보수위(17.3월~ 현재)	리스크위원장('17.3월~현재)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이 미 현	`17.3.30.	`19.3.30.	12 개월	감사위(17.3월~ 현재) 리스크위(17.3월~ 현재) 보수위(17.3월~ 현재) 임추위(17.3월~ 현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행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은행장의 최소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계획 수립 등이며, 이사회가 매년 은행장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당행은 씨티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룹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핵심인재검토(Talent Review) 프로세스를 통해 은행장 및 주요 임원 등의 후보자들을 효과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있으며, 정기 또는 수시 연수를 통해 그 역량을 극대화하여 원활한 승계절차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 첨부 9. 한국씨티은행 경영승계규정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은행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경영승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최소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승계절차 개시 시점에서 관련법령 및 경영승계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검증한 후 은행장 후보자를 추천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은행장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은행장 선임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발굴 및 선정은 씨티그룹의 핵심인재 관리(Talent Review) 프로세스에 따라 선정되며, 이러한 핵심인재 관리는 한국씨티은행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씨티그룹 계열사를 포함하는 인재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국내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세계 씨티그룹의 경영진 누구라도 한국씨티은행의 은행장 승계 후보자가 될 수 있지만, 효율적인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운영을 고려하여 한국씨티은행의 은행장

경영승계계획 후보는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하여는 그룹차원의 리더십 및 경영자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씨티그룹 전세계의 'Managing Director' 직급 이상인 경영진에게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Citi Forum', 판단력, 리더십, 청렴성, 관계형성을 주제로 최고경영자로 인증 받은 후보자들에게 리더십 역량을 배양하는 집합교육 프로그램인 'Citi Country Officer(CCO) Leadership'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임기만료 등으로 경영승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최종 직무수행일 30일 이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기존 후보군에 대하여 승계절차 개시 시점에서 소극적 자격요건을 재검증하여 대상 후보군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후 면접을 통해 후보자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과 경영방침을 심사하여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자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임원후보추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사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후보군에 대해 심의하고 이사회에 최종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이사회는 결의를 통하여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경영승계절차를 완료합니다.

(2) 비상계획

당행 정관 제26조 제3항에 따라 은행장의 유고 시 이사회가 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상법 제408조에서 규정한 회사의 상무에 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또한 당행은 경영승계규정 제3조 및 4조에서 은행장의 사임, 해임, 관계 법령상 결격요건 발생으로 인한 퇴임, 은행장의 질병 및 천재지변 등 발생

으로 인한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경영승계 개시 결정, 직무대행자 선정 및 후보자 선정 절차 등의 경영승계 절차를 미리 정하여, 비상상황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내부 경영승계규정

- 평가

당행의 최고경영자 후보들에 대해 상기 관련법령 및 내부 승계규정에서 정한 소극적 요건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 27일 당행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된 박진회 은행장의 경우 위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은행장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씨티그룹의 비전을 공유하고 씨티그룹의 책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로서 리더십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하며, 금융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경영승계규정 제5조 제2항).

- 평가

매년 실시하는 씨티그룹 핵심인재 검토(Talent Review) 프로세스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상기 자격요건을 검토하였으며, 후보자 모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7년 9월 22일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된 박진회 후보자는 1984년 10월 씨티

은행 서울지점에 입행한 이래 자금담당 본부장, 기업금융본부장, 재무담당 부행장, 경영지원그룹장, 기업금융그룹장 등의 직을 거쳤습니다. 위와 같은 30년 이상의 금융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상기 후보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갖추었으며, 지난 은행장으로서의 재임 기간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은행의 윤리·문화의식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를 진행하고 민원 제로 캠페인을 시행하여 고객 만족과 금융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재임기간 중 노사관계 및 대직원 관계에 있어서 일관된 메시지와 태도로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였으며,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 거래 확대, 수준 높은 자산관리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비자금융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은행의 장기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17년 9월 22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박진회 후보자를 최고경영자 후보로 주주총회 앞 추천하였으며, 2017년 10월 27일 주주총회 의결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행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한국씨티은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 선정을 위하여 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을 위하여 매년 경영승계 계획을 점검하고 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경우 은행장 박진회의 임기가 2017년 10월 27일로 만료됨에 따라 당행의 내규인 '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016년 12월 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은행장 후보군을 바탕으로 2017년 9월 22일 박진회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포함하여 심층 검증하였습니다. 박진회 후보자를 포함한 총 3인의 후보자 가운데 박진회 후보자 외 2인의 후보자는 은행장으로서의 리더십과 업무 역량을 아직 쌓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판단되었고, 지난 임기 동안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배구조법 및 당행 내규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박진회 현 은행장을 은행장 후보로 재선임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박진회 후보자는 임기 3년의 은행장으로 재선임되었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결과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16. 12.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최고경영자 후보군 검토
2017. 9. 2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군 검토 결과 박진회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결정
2017. 10. 27.	임시주주총회	박진회 이사 선임
	이사회	박진회 대표이사 선임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행은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승계규정 제6조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은행장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행은 씨티그룹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핵심인재검토(Talent Review) 프로세스를 통해 은행장 후보자들을 효과적으로 발굴, 육성하며, 정기 또는 수시 연수를 통해 후보자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경영의 안정적 승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승계규정 제6조)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당행은 2017년말 현재 총 2명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장 후보군 관리를 담당하고, 인사본부와 이사회 지원부서인 법무지원부가 실무적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장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은행장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보자 발굴 시 주주,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자문기관 등 은행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 발굴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한편, 다양한 사업 부문의 고위 경영진은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에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발표 및 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를 통하여 은행 내부의 인재 풀에 대하여 이해하고 은행장 후보자 선정 시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구분		후보군 수	백분율	기타
내부		2	100%	핵심인재관리(Talent Review)
외부	금융회사	-		
	비금융회사	-		
	공공기관	-		
	기타	-		
합계		2	100%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당행 경영승계규정 제7조상 승계업무 지원부서의 역할은,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검증, 그밖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업무지원 등입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등 내역에 대해 연 1회 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매년 승계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가 적정성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9월 2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임기만료에 따른 은행장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및 주총에서 최종 선임을 하였습니다. 은행장후보 추천시 최고경영자 후보군 2명에 대해서도 추천을 검토하였으나 은행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업무역량을 쌓아가고 있는 단계의 후보자로 판단되어 해당 추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경영승계규정 제8조에 따라,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는 인사본부가 담당하고,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관련 업무는 이사회 지원부서인 법무지원부에서 담당합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인사부(승계계획), 법무지원부(주주총회, 이사회관련)

- 직원 수: 인사부(총 2명), 법무지원부 (총 4명)

- 담당자:

인사부장 이황주(02-3455-2225), 담당- 부부장 정상재(02-3455-2251)

법무지원부 상무변호사 양재선(02-3455-2379), 담당-변호사 김강현(02-3455-2183)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한국씨티은행 감사위원회는 은행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이사회 내 상설 위원회입니다. 업무감사를 위해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 감사 등 내부감사계획을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을 통해 은행 경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감시합니다. 또한 은행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경영진 등을 독립적으로 견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행 사외이사는 회계, 경제, 법률 및 컴퓨터공학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본부장 및 감사본부를 두고, 감사본부장의 임면을 감사위원회의 권한으로 하여 감사 보조조직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그 보조조직인 감사본부를 통해 이사회 및 이사회부속위원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고, 이사회 및 각 부속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기 전 안건에 관한 이상 여부를 확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2017년 감사위원회는 보조조직인 감사본부를 통하여 이사회가 결의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및 IT 감사를 총괄하는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본부장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고, 경

영진을 통제합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2017년 연간 검사계획을 승인하고, 2017년 6월 및 8월 감사위원회에서 이를 수정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월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 감사결과를, 6월/8월/11월 감사위원회에서 내부검사 결과를 보고 받는 등 주기적으로 검사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합니다.

또한 매 분기 내부통제 현황을 보고 받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며, 3월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은 감사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KPMG 삼정회계법인을 2017년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씨티그룹 차원의 감사업무의 연계성 및 감사 효율성을 고려하여 KPMG 삼정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다) 감사본부장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3) 위원회 결의로 위임한 사항 4) 감독당국 관련 각종 업무보고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감사위원회규정 제16조), 감사본부장 직무규정을 제정하여 구체적 권한과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영업보고서, 재무제표, 동 부속명세서 등의 결산서류를 보고 받아 검토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감사위원회에서 201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받고, 이를 2017년 3월 감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내부회

계관리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현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에 따라 은행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정관 제29조에 의해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이사회에서는 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관 제29조 제3항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바, 상기 사외이사 중 김경호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적 자격요건에 부합하였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경호	사외	감사위 위원장	'15.03.27	'18.03.30.
한상용	사외	위원	'16.03.30	'18.03.30.
안병찬	사외	위원	'16.03.30	'18.03.30.
이미현	사외	위원	'17.03.30	'19.03.30.
한상만	사외	(전) 위원	'12.03.30.	'17.03.30.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7년에는 총 8회의 감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96%입니다. 정기 감사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들의 평균 참석율은 100%로 더욱 내실 있는 감사위원회 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별 내부 감사 결과 보고받아 적절한 통제를 하였고, 감사위원회의 보조조직인 감사본부장의 평정을 심의하는 등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7 년 제 1 차 감사위원회: 2017.1.17.(화) 15:15 – 15:25 [통지일: 2017.1.1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한상만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감사본부장 임면 동의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7 년 제 2 차 감사위원회: 2017.2.15.(수) 08:20 – 09:45 [통지일: 2017.2.8]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한상만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가. 2016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나. 2016 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해당사항 없음				
다. 2016 년 4/4 분기 내부통제 현황 보고	해당사항 없음				
라. 2016 년 내부 및 감독기관 검사 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마. 2016 년 4/4 분기 Internal Audit 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외부감사인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7 년 제 3 차 감사위원회: 2017.3.8.(수) 14:25 – 15:20 [통지일: 2017.3.3]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한상만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평가 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감사보고서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6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 및 평가보고서 검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감사본부장 및 IA부장 2017년 목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 제 4 차 감사위원회: 2017.6.2.(월) 14:00 – 15:25 [통지일: 2017.5.26]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 회계연도 1/4 분기 가결산 검토 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나. 2017 년 1/4 분기 내부통제 현황 보고	해당사항 없음				
다. 2017 년 1 월~4 월 내부 및 감독기관 감사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라. 2017 년 1/4 분기 Internal Audit 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마. RFI 진행상황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7년 감사계획 수정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 제 5 차 감사위원회: 2017.8.24.(목) 13:30 – 15:00 [통지일: 2017.8.17]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 회계연도 반기 가결산 검토 결과 및 2017 감사계획 보고		해당사항 없음				
나. 2017 년 2/4 분기 내부통제 현황 보고		해당사항 없음				
다. 2017 년 5 월~7 월 내부 및 감독기관 감사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라. 2017 년 2/4 분기 Internal Audit 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7년 감사계획 수정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 제 6 차 감사위원회: 2017.9.22.(금) 16:20 – 16:30 [통지일: 2017.9.15.]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 제 7 차 감사위원회: 2017.11.22.(수) 14:30 – 15:50 [통지일: 2017.11.15.]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 회계연도 3/4 분기 가결산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음				
나. 2017 년 3/4 분기 내부통제 현황 보고	해당사항 없음				
다. 2017 년 8~10 월 내부 및 감독기관 감사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라. 2017 년 3/4 분기 Internal Audit 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 2017 Franchise Audit 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8년 감사부 감사계획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 제 8 차 감사위원회: 2017. 12. 14.(목) 14:30 – 14:50 [통지일: 2017.12.8.]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불참 (학회 일정)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내부감사 관련 직원의 평가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감사본부장 및 IA 부장 개인지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가결

(3) 평가

당행은 매년 초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사외이사 평가를 통하여 부속 위원회 활동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1) 감사 보조조직 현황

당행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본부장 산하에 감사본부를 두고, 감사부(23명) 및 IA 부(7명)의 2개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부는 영업점 검사, 금융사고 조사, 상각검사, 일상감사 및 상시감시 업무 등을 담당하며, IA 부는 상품/기능별 위험기반 검사, 대내외 통제환경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및 대내외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슈 검증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보고 주요 안건(2017년)

일자	대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17. 02. 15	감사위원회	2016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결과 보고 2016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16년 4/4분기 내부통제 현황 보고 2016년 내부 및 감독기관 검사 결과 보고 2016년 4/4분기 Internal Audit 결과 보고
2017. 03. 08	감사위원회	2016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 및 평가보고서 검토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평가 결과 보고
2017. 06. 02	감사위원회	2017 회계연도 1/4분기 가결산 검토 결과 보고 2017년 1~4월 내부 및 감독기관 검사결과 보고 2017년 1/4분기 내부통제 현황 및 Internal Audit 결과 보고 씨티그룹 한국씨티은행 프랜차이즈 감사준비(RFI) 진행상황 보고
2017. 08. 24	감사위원회	2017 회계연도 반기 가결산 검토 결과 및 2017 감사계획 보고 2017년 5~7월 내부 및 감독기관 검사결과 보고 2017년 2/4분기 내부통제 현황 및 Internal Audit 결과 보고

일자	대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17. 11. 22	감사위원회	2017 회계연도 3/4분기 분기 가결산 검토 결과 및 감사계획 보고 2017년 8~10월 내부 및 감독기관 검사결과 보고 2017년 3/4분기 내부통제 현황 및 Internal Audit 결과 보고
2017. 12. 14	감사위원회	감사본부장/IA 부장 개인지표 평가 및 내부감사 관련 직원의 평가 보고

7.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한국씨티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은행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며,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승인하는 등 경영진이 수행하는 리스크관리 업무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리스크 관련 각종 한도를 승인하고 동 한도 범위 내에서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경영진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의 기본방침을 수립합니다. 2017년 12월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2018년 한국씨티은행의 리스크 관리 기본방침 승인을 하였습니다. 리스크 프레임워크, 리스크 성향, 리스크 통제의 실효성 개선과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및 시스템 개선, 자동화를 통한 승인, 운용, 보고의 효율성 개선을 주요 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담당임원(CRO)로부터 매 분기 리스크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설정한 허용한도 등을 유지하는지 등 전반적 사항을 관

리하고 있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은행이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하는 바, 2017년 12월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2018년 위험자본 한도를 승인하였습니다. 위험자본 사용량 증가에 따라 총 위험자본한도를 증액하였으며, 전체 위험자본한도는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110%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7년 12월 개최된 위원회에서 2018년 한국씨티은행의 포트폴리오한도를 승인하였습니다. 기업금융의 업종 편중 한도를 다소 증액하고, 과거 한도사용 추세 및 사업계획을 토대로 기업금융의 1년 초과 포트폴리오 한도 증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자금융부분의 포트폴리오 한도는 자산최적화 및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모기지 한도감액과 개인신용대출의 한도증액을 중심으로 금융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한국씨티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그 부속법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리스크관리기준을 2016년 8월 31일 이사회 승인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기준은 은행의 경영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리스크 유형별로 인식, 측정, 관리, 모니터링 및 통제하기 위한 관리체계, 문화, 역할과 책임,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15일 이사회에서는 지배구조법에 의한 리스크관리조직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동법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리스크관리기준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마)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은행의 연간 자금조달 및 유동성 계획을 승인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에 개최된 위원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이용한 위기상황 자금조달 계획 능력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도를 조

정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년에 두 차례 통합위기사
 황 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동 분석 결과를 은행의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등 중요 의사결정에 활용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개최된 위원회 및 12월 개최된 위원회에서 한국씨티은행의 통합위
 기상황 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은행의 위험수준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은행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7조 및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에 따라
 동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 및 그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합
 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
 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전문성 요건). 연차보고
 서 공시일 현재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과 비상임이사 1인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전원이 포함된 것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사외이사의 다양한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동 위원회 위원인 김경호 이사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중 1인은 금융, 회계,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전
 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 위원인 피유쉬 아그라왈
 비상임이사는 씨티그룹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스크최고책임자로서 리스크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며, 리스크관리에 있어 씨티그룹과의 연계성 및 글로
 벌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화 된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안병찬	사외	리스크 위원장	'16.03.30.	'18.03.30.
김경호	사외	위원	'15.03.27.	'18.03.30.
한상용	사외	위원	'16.03.30.	'18.03.30.
이미현	사외	위원	'17.03.30.	'19.03.30.
피유쉬 아그라왈	비상임	Citi APAC CRO	'15.10.16.	'18.10.16.
한상만	사외	(전) 리스크 위원장	'12.03.30.	'17.03.30.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7년에는 총 5회차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7 년 제 1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7.02.23.(목) 14:00 – 15:30 [통지일: 2017.02.16]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아그라왈	한상만	김경호	한상용	안병찬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6 년 4/4 분기 분기별 리스크 현황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국가별 위험관리규정 제정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주요 리스크 지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7 년 자금조달 및 유동성에 관한 계획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 제 2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7.6.2.(금) 15:30– 16:30 [통지일: 2017.5.26.]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아그라왈	안병찬	김경호	한상용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 년 1/4 분기 분기별 리스크 현황 보고	해당사항 없음					
나. 2017 년 상반기 CKI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7년 소비자금융 포트폴리오 한도 변경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한국씨티은행 자산건전성분류규정 변경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 제 3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7.8.24.(목) 15:10– 16:00 [통지일: 2017.8.17.]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아그라왈	안병찬	김경호	한상용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 년 상반기 CKI 역 위기상황 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나. 2017 년 2/4 분기 분기별 리스크 현황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한국씨티은행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체제에 관한 규정 및 절차의 연례 검토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7년 소비자금융 포트폴리오 한도변경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 제 4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7.11.22.(수) 17:30- 17:50 [통지일: 2017.11.15.]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아그라왈	안병찬	김경호	한상용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 년 3/4 분기 분기별 리스크 현황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	-	-	-	-	

2017 년 제 5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7.12.14.(목) 16:05- 16:30 [통지일: 2017.12.8.]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아그라왈	안병찬	김경호	한상용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학회 일정)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 년 하반기 CKI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8년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가결
나. 2018년 CKI 포트폴리오 한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가결
다. 2018 년 CKI 리스크 한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가결

라. 2017 년 내부자본적정성 보고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가결
마. LCR Prime 종료와 RLAP 시행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가결

(3) 평가

당행은 매년 초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사외이사 평가를 통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8. 이사회운영위원회 (2017. 3. 30. 폐지 후 이사회로 통합)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지배구조법의 시행 이전까지 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부속위원회로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이사회의 연간 계획 수립 및 사외이사 평가 등 이사회 운영의 주요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지배구조법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당행은 2017년 3월 30일부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던 상기 주제를 이사회에서 직접 논의하도록 절차를 개정하고, 이를 반영한 규정의 개폐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 구체적 역할

이사회운영위원회(2017년 3월 30일 이후 이사회로 통합됨)는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며, 이사회의 활동상황 및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의 규정, 운영 및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의하는 등 이사회 위주의 지배구조를 위한 위원회입니다.

나. 구성(이사회운영위원회위원)

(1) 총괄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동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 및 각 이사회부속위원회의 위원장으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가 3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사회로 해당 기능이 통합되어 이사회 위원 전원이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

(2) 구성원(2017년 3월 기준)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박진회	상임	위원장	`14.10.27.	`20.10.27.
한상만	사외	위원	`12.03.30.	`17.03.30.
김경호	사외	위원	`15.03.27.	`18.03.30.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이사회운영위원회는 2017년도 중에 한 차례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의 참석률은 100%입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2016년 사외이사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7년 제1차 이사회운영위원회: 2017.3.8(수) 14:15 - 14:20 [통지일: 2017.3.3]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박진회	한상만	김경호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6년 사외이사 평가결과 보고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	-	-	

(3) 평가

당행은 매년 초 이사회에서 실시하는 사외이사 평가를 통하여 부속위원회 활동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한국씨티은행은 보상프로그램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이익에 부합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씨티의 기업 문화를 반영하며, 씨티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룹의 보상 원칙은 물론 국내에 설립된 현지법인으로서 국내 감독 규정에서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보상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여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부속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 정책에 상기 기술한 씨티의 보상 철학이 실제 보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및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당행 이사회 규정 제9조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구성은 매년 이사회가 시작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되며, 보수위원회 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의 안건, 세부 논의 내용 및 안건의 가/부결 여부, 반대가 있을 경우 상세 의견 및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총괄

당행의 보수위원회는 은행의 보상철학이 실제 보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보수 체계 및 그 집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평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성과보상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고,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대상자를 결정하며, 그들의 성과 평가에 기반한 보상을 결정합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상제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을 평가 및 심의합니다. 이러한 성과보상체계가 은행의 재무상황 및 리스크와 연계되도록 보상을 결정하며, 연차보수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구성원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원 중 1인은 금융회

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보수위원회규정 제4조). 사외이사는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사외이사의 참여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당행의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과 비상임이사 1인의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한상용 (위원장)	사외	위원장	'16. 3. 30.	'18. 3. 주총일.
안병찬	사외	위원	'16. 3. 30.	'18. 3. 주총일.
이미현	사외	위원	'17. 3. 30.	'19. 3. 주총일.
프란시스코 아리스떼기에따	비상임	위원	'15. 10. 16.	'18. 10. 16.

3)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현황

당행의 위험관리부서는 리스크관리그룹이며,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본부입니다

리스크관리그룹은 3개의 부와 1팀이 소속되어 있으며 2017년 12월말 기준 최고위험관리자 (Chief Risk Officer)를 포함하여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본부는 1개의 부와 1팀이 소속되어 있으며 2017년 12월 기준 준법감시인 포함하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그룹의 경우 해당 업무 평균근속 연수는 5.8년, 준법감시본부는 4.3년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보유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권한과 책임

1)총괄

위원회는 ①임원 등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②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 ③임원 등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④ 임원 등에 대한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⑤이사(사외이사, 비상임이사 제외)에 대한 성과 평정, ⑥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합니다(보수위원회 규정 제7조).

보수위원회규정 제 11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들은 상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은행의 보상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17년 1월 17일에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는 앞서 2016년 8월 31일에 동 위원회가 승인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평가 및 보상방안에 따라 2016년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에 대한 성과 평가를 확정하고 성과급 지급 및 기본급에 대하여 결의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17년 3월 8일에 열린 보수위원회에서는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17년 6월 2일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는 보수 체계의 설계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고, 임원의 성과에 대해서는 CAMEL 지수에 기반한 공동 지표, 영업부문별 수익성과 건전성 목표에 기반한 영업지표, 그리고 개인별 지표를 그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단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부서 임원 감사본부장 및 IA부장에 대해서는 위 지표 중 수익성 항목을 평가의 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리스크관리 및 내부 통제업무의 수행 과정이 은행의 영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해상충을 피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2일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는 성과보수의 이연과 관련하여, 2017년 12월 6일 시행된 개정지배구조법시행령 및 씨티그룹의 글로벌 규정에 따라, 각 임원 등의 업무에 대한 책임 및 장기 성과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비율을 40%으로 총 4년에 걸쳐 이연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행의 보수위원회 규정은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중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2017년 6월 2일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 심의한 연차보수평가과정에서, 당행의 보수체계전반을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심의하고 2016년 중 이루어진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 및 내부규정체제 및 그 운용 면에서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동일 날짜에 개최된 보수위원회의 2017년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평가 및 보수방안 심의 의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017 년 11 월 22 일에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는 개정 지배구조법시행령 및 씨티그룹의 글로벌 규정에 따라, 각 임원 등의 업무에 대한 책임 및 장기적 성과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비율을 40%으로, 총 4 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는 것을 각각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2017 년 6 월 2 일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연차보수평가를 실시하고,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국내의 모든 사업부에 적용됩니다.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2017 년 6 월 2 일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는 지배구조법에 따른 보수위원회의 보수 검토 대상 임원에 은행장, 수석부행장 및 부행장을 포함하여 위험관리책임자(CRO), 준법감시인, 감사본부장, IA 부장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였는 바, 이는 법규에 따른 대상 임원 뿐 아니라 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의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직군을 보수위원회의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행 자금시장그룹의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 판매 등을 담당하는 세일즈 직무를 부문장급(Director) 이상 직원,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트레이딩 직무는 3 급(VP) 이상인 직원을 보수위원회의 검토 대상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2017 년 12 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등	14	은행장, 수석부행장, 부행장,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감사본부장, IA 부장
금융투자업무담당자	6	자금시장그룹의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 판매 등을

		담당하는 세일즈 직무는 부문장급(Director) 이상 ,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트레이딩 직무는 3 급(VP) 이상 직원
--	--	--

10) 기타

해당사항 없음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절차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보수위원회규정 제 6 조),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보수위원회규정 제 8 조).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2017 년도 중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되,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위 다. 권한과 책임, 5)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참조

3) 회의 개최내역

2017 년 제 1 차 보수위원회: 2017. 1. 17.(화) 15:25-16:20 [통지일: 2017.1.1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아리스떼 기에따	한상만	김경호	한상용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6 년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평가 및 보상 방안개정 승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성과보상운영규정 개정 승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대한 보수 지급 승인					
--	-------------	--	--	--	--	--

2017 년 제 2 차 보수위원회: 2017. 3. 8. (수) 4:10-4:25 [통지일: 2017.3.3.]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아리스떼기에따	한상만	김경호	한상용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6 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 제 3 차 보수위원회: 2017.3.30.(목) 17:00-17:20 [통지일: 2017.3.23.]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아리스떼기에따	한상용	안병찬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7 년 이사 기본급(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신입집행임원 기본급(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 4 차 보수위원회: 2017.6.2.(금) 17:30-18:00 [통지일: 2017.5.26.]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아리스떼기에따	한상용	안병찬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7 년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평가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6 년 연차보수평가(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 5 차 보수위원회: 2017.8.24.(목) 17:20-17:30 [통지일: 2017.8.17.]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아리스떼기에따	한상용	안병찬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신임집행임원 기본급(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 6 차 보수위원회: 2017. 11. 22. (수) 17:00-17:25 [통지일: 2017.11.15.]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아리스떼기에따	한상용	안병찬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평가 및 보상 방안 개정(안)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7 년 성과급 이연지급율(안)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조기 퇴직 집행임원의 특별 보수 지급 (안)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등기임원 기본급(안)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 7 차 보수위원회: 2017.12.14.(목) 15:00-15:15 [통지일: 2017.12.8.]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아리스떼기에따	한상용	안병찬	이미현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7 년 은행장 개별지표 평가 승인	찬성	찬성	찬성	불참	가결

4) 평가

당행은 매년 초 이사회에서 실시하는 사외이사 평가를 통하여 부속위원회인 보수위원회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당행은 은행의 성과와 성과보수가 연동될 수 있도록 CAMEL, 즉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BIS 비율),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신용비용비율), 경영일반(Management, 고객만족도지수 및 직원만족도지수 등), 수익성(Earning, 대손충당금설정전이익 및 보통주자본이익률), 유동성(Liquidity, 예대율)를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감사본부장 및 IA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에 대해 상기 지표를 기준으로 은행의 공동지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감사본부장 및 IA 부장은 수익성 지표를 제외하고 자본건전성과 자산건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비즈니스그룹인 경우에는 수익성과 건전성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는 사업별 총 수익금액(Revenue), 총자산이익률(RoA), 보통주자본이익률(RoTCE)을 사용합니다.

이에 더하여 비즈니스 전략, 디지털뱅킹,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 등과 같은 정성적인 목표 및 씨티그룹의 표준 리더십을 평가하는 개별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합니다.

은행장은 보수위원회가 승인한 상기의 공동지표, 비즈니스지표 및 개별지표의 평가 결과와 역시 보수위원회가 승인한 성과보수 지급기준표를 바탕으로 각 임원의 보수(안)을 제안하고 보수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은행장의 성과보수는 보수위원회가 결정하며, 감사위원회의 보조조직의 장인 감사본부장 및 IA 부장의 성과보수는 상기 공동지표 및 감사위원회가 부여한 개별지표 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상기 지급기준표의 범위에서 보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리스크를 감당한 개인 수익 공헌도와 리스크를 감당한 팀 수익공헌도 등을 반영한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목표 및 표준 리더십을 평가하는 개별지표를 바탕으로 보수위원회가 승인한 성과보수 지급기준표에 따라 성과보수가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은행 전체의 성과와 더불어 비즈니스와 개인의 성과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개개인의 성과보수를 결정합니다. .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당행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 보수의 일정 부분을 주식과 현금의 형태

로 이연하여 4 년에 걸쳐 매년 25% 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하 이연지급보상). 이연 지급 보상은 보상 금액의 규모에 따른 편차를 감안하여 총 해당 연도에 지급 받게 될 총액기준으로 이연 보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익년도 1 월말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연 보상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 임직원의 고용상태가 유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이 종료된 경우라 할지라도, 씨티그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를 들어 ① 일정 연령과 근속 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② 사망의 경우 등, 예는 이연 보상이 확정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른 권고 사직이나 당행의 징계규정에 따른 해고 등 중대한 과실을 포함하여 주요 정책을 위반한 경우에는 미확정 주식이나 현금의 이연 보상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은 연봉 형태의 고정보수이며 개별 임원의 성과 평가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성과급은 성과보수로 분류됩니다.

성과보수는 현금과 주식 및 이연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 관련 법규 및 씨티그룹의 글로벌 보상정책을 바탕으로 보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이연 지급 구성 요소와 그 비율 및 이연 기간을 확정하였습니다.

4)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수체계의 독립성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은 성과 평가 시 수익성 지표를 배제하고 자산건전성과 자본과 유동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며 성과보수체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5)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당행은 일부 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점 세일즈 인력을 대상으로 세일즈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고, 본점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합의에 따라 은행의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단체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주의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예정입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향후 임금체계의 단순화와 합리화를 통하여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6)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행은 보수위원회규정 제 11 조 제 2 항에 의거 보수위원회에 외부자문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7 년도 중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자문 요청은 없었습니다.

7)보수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성과보상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8)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사항

2017 년 중 보수체계는 전년도의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였으며 감사본부장 및 IA 부장의 경우 성과 평가 시 수익성 지표를 제외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임원의 공동지표 중 수익성 지표와 관련, 위험조정 자산 수익률(RORAP)를 일관된 지표 관리를 위하여 보통주 자본수익률(RoTCE)로 변경하였습니다.

2017 년 11 월 22 일 개최된 보수위원회 결의에 따라,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 이연 지급 비율을 40% 으로 4 년에 걸쳐 이연 지급 하는 것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9)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기준

임원의 보수체계 설계 시 공동 지표 항목에 주요 리스크 지표인 신용비용비율(Cost of Credit), 보통주자본수익률(RoTCE), 유동성(Liquidity)를 반영하였고, 비즈니스 지표에서는 총자산수익률(ROA) 및 보통주자본수익률(RoTCE)를 적용하여 은행의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가 반영된 수익률 지표가 보수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측정지표>

1.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BIS 비율

정의: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동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자본이 충실하여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함.

2.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신용비용비율(Cost of Credit)

정의: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건전성이 양호함을 의미함.

3. 경영일반(Management): 직원소리듣기(VOE), 상대적 고객추천지수(rNPS), 고객의 소리(VOC), 기술금융, 디지털뱅크 지표를 그 내용으로 함.

(1) VOE

정의: 직원 의견 조사 항목의 평균 만족도를 나타냄

(2) rNPS

정의: NPS (Net Promoter Score)고객추천지수의 경쟁사간 상대비교 지수

(3)VOC

정의: VOC (Voice of Customer) 고객의 은행에 대한 평가 점수

(4)기술금융

정의: 기술금융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기술금융 평가액 및 차주수 순증가

(5) 디지털 뱅킹

정의: 은행의 금융 거래 고객 중 디지털 뱅킹 이용 고객 비율

4. 수익성(Earning): 대손충당금 설정 전 이익(Margin), 보통주자본수익률 (RoTCE)

(1) 대손충당금 설정 전 이익(Margin)

정의: 총수익에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이익이며, 동 금액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보통주자본수익률 (RoTCE)

정의: 각종 리스크를 감안하여 은행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동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양호함을 의미함

4. 유동성(Liquidity):

정의: 원화기준으로 예금대비 대출 비율을 나타내는 유동성 지표이며, 동 비율이 낮을수록 유동성이 양호함을 의미함

임원의 경우 해당 지표들이 일정 비율로 임원의 성과 지표로 직접 반영되고 있으며 성과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보수가 확정됩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리스크를 감안한 개인 수익 공헌도와 리스크를 감안한 팀 수익공헌도 등이 성과 지표로 직접 반영되고 있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A/B)		
전년도 (2016년)	3,433	3,516	97.6%	3,566	0.96
당해년도 (2017년)	3,705	2,802	132.2%	3,567	1.04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연말 재직 기준임)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예시 : 당해연도가 2017년인 경우 2016년 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등기임원 ^{주1)}	비등기임원	관리자	책임자	행원
전년도 (2016년)	보수총액	12.4	52.3	1,501.7	1,271.2	596.2
	성과보수액	5.6	26.9	162.4	75.1	37.8
당해년도 (2017년)	보수총액	15.7	76.4	1,588.3	1,401.3	623.1
	성과보수액	8.4	34.5	201.5	130.7	58.3

주 1) 등기임원으로 기여한 성과에 대한 보수임.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보수액 ^{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6년)	임원 등	12	39.1	46.4	16.1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8	18.1	12.7	3.2
당해년도 (2017년)	임원 등	14	41.9	52.0	20.1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6	16.5	11.8	4.7

주1)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임원 등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1)}	주식연계 상품 ^{주2)}	기타 ^{주3)}
전년도 (2016년)	임원 등	46.4	37.6		8.8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2.7	11.1		1.6	
당해년도 (2017년)	임원 등	52.0	42.4		9.6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1.8	10.4		1.4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2) 주식연계상품 : 성과보수액에 상당하는 씨티그룹 주식으로 지급함.

주1)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주4) 해당년도 중에 씨티그룹 내에서 이동이 있는 경우 한국씨티은행 근무 해당분만 포함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6년)	임원 등	79.6	28.8	50.8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6.9	6.7	10.2
당해년도 (2017년)	임원 등	70.9	23.7	47.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4.9	4.8	10.1

주1) 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한다.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주3) 2017년 발생 성과보수액을 익년도 1/4분기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2017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16년)	임원 등	79.6	40.9		38.7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6.9	10.6		6.3	
당해년도 (2017년)	임원 등	70.9	35.5		35.4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4.9	9.5		5.4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임원 등	79.6	16.2	20.0	20.8	15.4	7.2

(2016년)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6.9	3.4	4.6	4.0	2.9	2.0
당해년도 (2017년)	임원 등	70.9	20.1	16.2	14.7	13.2	6.7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4.9	4.7	3.4	3.3	2.4	1.1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6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16년(t기) 발생분, 2015년(t-1기) 발생분, 2014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주4)
		축소액주1)	직접적 조정주2)	간접적 조정주3)	
전년도 (2016년)	임원 등	0	0	0	79.6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5	1.5	0	16.9
당해년도 (2017년)	임원 등	0	0	0	70.9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14.9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6년)	임원 등	0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당해년도 (2017년)	임원	0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주) 임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제외

8)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은행에 한함)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6년)	임원 등	0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당해년도 (2017년)	임원 등	0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성의 보장상여는 보장성 상여금에서 제외 (이하 동일)

주) 기존 고용자 : 당해 회계연도 이전부터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해당된 자를 기재

9)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은행에 한함)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6년)	임원 등	0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당해년도 (2017년)	임원 등	0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주) 신규 고용자 : 당해 회계연도중에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해당된 자를 기재

10) 일회성 인센티브^{주)} 지급 건수 및 금액(은행에 한함)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일회성 인센티브 ^{주)}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6년)	임원 등	0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당해년도 (2017년)	임원 등	0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주) 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상(Sign-on awards)

정관

제	정 : 1981.09.04
개	정 : 1982.08.07
개	정 : 1983.01.29
개	정 : 1983.03.02
개	정 : 1984.02.28
개	정 : 1985.02.26
개	정 : 1988.02.26
개	정 : 1988.06.11
개	정 : 1989.02.23
개	정 : 1989.04.28
개	정 : 1990.02.22
개	정 : 1992.02.25
개	정 : 1995.02.22
개	정 : 1996.02.22
개	정 : 1997.02.26
개	정 : 1998.02.26
개	정 : 1998.09.07
개	정 : 1999.02.12
개	정 : 2000.03.20
개	정 : 2001.01.06
개	정 : 2001.05.17
개	정 : 2002.03.22
개	정 : 2003.03.21
개	정 : 2004.09.23
개	정 : 2006.03.29
개	정 : 2010.03.30
개	정 : 2011.03.25
개	정 : 2011.04.01
개	정 : 2012.03.30
개	정 : 2014.03.28
개	정 : 2014.09.19
개	정 : 2014.09.19
개	정 : 2015.03.27
개	정 : 2016.03.30
개	정 : 2017.03.30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은행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Citibank Korea Inc.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① 이 은행은 다음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2. 외국환업무
3. 신탁업무
4. 전 각호의 업무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② 이 은행은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제3조(본점, 지점 및 사무소 등) ① 이 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은행은 국내외에 지점, 사무소 또는 기타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이 은행의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및 지배인의 선·해임에 관한 사항은 은행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공고방법) ① 이 은행의 공고는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그러나 그 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울신문에 게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41조에 의해 재무제표의 공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65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한다.

제2장 주식

제5조(발행할 주식총수) 이 은행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이 은행의 1주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은행의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이 은행이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이 은행이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8조의2(기명식 우선주식) ① 이 은행이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4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

당을 정한다.

③ 이 은행이 발행할 우선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이 은행이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한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은행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정부 등의 출자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은행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3(사채의 발행) ① 이 은행은 이사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의4(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은행은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후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5(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은행은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후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6(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명의개서 등), 제11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조(명의개서 등) ① 이 은행은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이 은행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0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① 주식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그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정지한다.

② 은행은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은행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은행은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3조(주주총회의 종류) ① 이 은행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눈다.

② 이 은행의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의한 주주의 청구 및 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청구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정기주주총회는 매영업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소집목적은 기재하여 총회 일로부터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의장) ① 은행장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은행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결권) ① 주주는 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이 은행의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결의) ① 주주총회는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결의한다.

②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제19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사본을 지점에 비치한다.

제4장 이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제20조(이사) 이 은행은 5명 이상의 이사를 두며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20조의2(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3. 다른 회사(은행의 자회사등, 자은행,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은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제21조(임기) 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사외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종료한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2조(결원의 보선) ① 이사가 결원되었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결원의 수가 이사회의 정족수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차기 정기주주총회가 2개월 이내에 소집될 예정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차기 정기주주총회까지 그 보선

을 연기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3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은행의 전반적인 정책수립과 일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업무에 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소집

나. 주주총회에 제출할 사항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경영목표 및 평가

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

다. 은행장의 경비집행 전결한도

3. 조직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변경

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개정 등 은행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다.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라. 「이사회규정」, 「사외이사운영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이사회부속위원회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경영위원회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다만, 관계법령·감독규정·「정관」 등 상위규정의 변경에 따른 개폐 및 단순한 자구수정은 은행장에 위임한다.

4. 이사에 관한 사항

가.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후보의 추천

나. 은행장, 수석부행장, 부행장의 선임 및 해임

다.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등과 은행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단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승인

라. 대표이사 은행장 「경영승계 규정」 제/개정

마. 은행장 승계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평가, 상시적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은행장 승계 개시 결정 및 직무대행자 선정

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 수립

5.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나. 금융채의 발행

6.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및 이사회부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8. 중요 계약 및 소송에 관한 사항

가.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인 중요한 출자

나. 건당 100억원을 초과하는 유·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다. 건당 소가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

9.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10. 기타사항

가. 내부통제제도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리스크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 절차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라. 상법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1. 기타 은행 경영의 기본이 되는 주요사항으로서 은행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삭제)

④ 이사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이사회 의장 또는 2명 이상의 이사의 요구에 따라 소집하며, 분기중 경영성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소집목적을 기재하여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절차를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이사회회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한다. 단,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회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25조(이사회결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제23조의2에 따른 위원회 포함)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와 직접,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법인, 기타단체와 관련된 의안이 이사회에

상정되었을 때에는 당해 이사는 그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밝혀야 하며 당해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가 행하는 심의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이사가 특정주주의 추천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 당해 이사는 그 사실만을 이유로 은행과 당해 주주 또는 그 주주의 관계회사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기타 거래에 관계된 의안의 이해관계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6조(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등) ① 이사회는 상임이사 중에서, 은행장 1명과 약간 명의의 수석부행장과 부행장을 호선할 수 있으며, 은행장은 은행의 대표이사가 된다.

② 은행장은 이사회 결의를 집행하고 은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통할한다.

③ 수석부행장과 부행장은 은행장을 보좌하며 은행장이 유고시에는 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2(은행장 후보 추천) ① 은행장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의3(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제28조(이사회회의록) 이사회 의사에 대하여는 회의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국·영문으로 작성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본점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위원회) ①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 1인을 둔다.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으로 하여금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 중 은행에 상근하는 위원은 감사위원회 관련 업무 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4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제출한 제서류를 감사하고 동법 제447조의4의 규정에 의거 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⑩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⑪ 감사위원회는 제10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29조의2(비사외이사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잃는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거나 이었던 자는 제외)

② 위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 ① 이사의 보수 및 손비처리되는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별도 임원퇴직금지급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계산

제31조(영업연도) 이 은행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회계) ① 이 은행은 공인회계법인의 지도 하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절차 및 관례에 준하여 적절한 양식의 기록 및 회계장부를 국문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법인은 은행업무와 회계기록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한다.

제33조(이익금의 처분) 매 영업연도의 이익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의결로 기타의 처분을 할 수도 있다.

1. 법정준비금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
2. 주주배당금
3. 임원상여금
4. 배당평균적립금
5. 퇴직위로적립금
6. 기타적립금
7.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34조(이익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배당은 각 영업연도 말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등록자에게 배당한다.

- 제35조(중간배당)** ① 이 은행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매 영업연도 6월말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 ③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 및 기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잡칙

제36조(신고) 이 「정관」은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전에 선임된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 「정관」에 의한 이사 및 감사가 되며, 그 임기는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제38조 (삭제)

제39조(상법적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은행의 「정관」은 정기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설립비용) 이 은행의 설립을 위하여 소요된 제비용은 설립 후 이 은행이 부담한다.

제42조(정관의 작성년월일) 이 「정관」은 1981년 9월 4일 작성한다.

제43조(발기인) 이 은행의 발기인의 주소 성명은 아래와 같다.
(발기인의 주소·성명 생략)

부칙 <2000.3.20>

1. (시행일자) 본 정관은 2000. 3. 20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1) 본 정관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사외이사로 본다.
(2) 본 정관 시행 당시 재임하고 있는 상임감사가 정기주주총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 종료시까지 감사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임감사는 그 임기의 만료시까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3)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6>

(시행일자) 본 정관은 2001. 1. 6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17>

(시행일자) 본 정관은 2001. 5.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2>

(시행일자) 본 정관은 2002. 3.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21>

(시행일자) 본 정관은 2003. 3.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23>

1. (시행일자) 본 정관은 2004. 9. 2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5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의 변경규정은 씨티은행 국내 지점의 영업을 양수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본 정관 시행일 이전에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변경전 정관 제9조의 6을 적용한다.

부칙 <2006.3.29>

(시행일자) 본 정관은 2006. 3.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30>

제1조(시행일자) 본 정관은 2010. 3.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0조의2 제1항 3호는 관련 법령에서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시행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3.25>

제1조(시행일자) 본 정관은 2011. 3.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

제1조(시행일자) 본 정관은 201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30>

제1조(시행일자) 본 정관은 주주총회의 승인일(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3, 제25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28>

제1조(시행일자) 본 정관은 2014. 3.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19>

제1조(시행일자) 본 정관은 2014. 9.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19>

제1조(시행일자) 본 정관은 2014. 9. 19 이 은행의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합병(이하 '본건 합병'이라 한다)의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시 발행하는 우선주식) 1. 이 은행이 본건 합병시 발행하는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그 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로 한다.

2. 제1항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우선배당율에 추가하여,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시 배당전부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며,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비누적인 것으로 한다.

부칙 <2015.3.27>

제1조(시행일자) 본 정관은 2015. 3.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30>

제1조(시행일자) 본 정관은 2016. 3.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0>

제1조(시행일자) 본 정관은 2017. 3. 30.부터 시행한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정	: 2011.05.17
개	정	: 2012.05.30
개	정	: 2013.11.29
개	정	: 2014.03.28
개	정	: 2014.09.03
개	정	: 2014.11.04
개	정	: 2015.02.11
개	정	: 2015.03.27
개	정	: 2016.10.26
개	정	: 2017.0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배구조내부규범」(“본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은행의 이사회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 1. 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공시하여야 한다.

2. 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제3조(제정 및 변경 등) 「지배구조내부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변경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의 구성 현황

제4조(구성기준) ① 은행은 5명 이상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은행은 다양한 분야에서 은행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

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① 은행은 매년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주주 전체를 대표하여 이사회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6조(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① 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3. 다른 회사(은행의 자회사등, 자은행,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제7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상임이사는 윤리기준과 씨티그룹의 "우리가 공유하는 책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으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은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비상임이사는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적인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8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상법, 은행법 및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사의 권한 사항으로 정한 것과 은행의 전반적인 정책수립과 일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소집

나. 주주총회에 제출할 사항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경영목표 및 평가

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

다. 은행장의 경비집행 전결한도

3. 조직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변경

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개정 등 은행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다.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라. 「이사회규정」, 「사외이사운영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이사회부속위원회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경영위원회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다만, 관계법령·감독규정·정관 등 상위규정의 변경에 따른 개폐 및 단순한 자구수정은 은행장에 위임한다.

4. 이사에 관한 사항

가.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후보의 추천

나. 은행장, 수석부행장, 부행장의 선임 및 해임

다.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등과 은행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단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승인

라. 대표이사 은행장 「경영승계 규정」 제/개정

마. 은행장 승계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평가, 상시적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은행장 승계 개시 결정 및 직무대행자 선정

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 수립

5.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나. 금융채의 발행

6.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및 이사회부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8. 중요 계약 및 소송에 관한 사항

가.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인 중요한 출자

나. 건당 100억원을 초과하는 유·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다. 건당 소가가 자기자본의 100 분의 1을 초과하는 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

9.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10. 기타사항

가. 내부통제제도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리스크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 절차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라. 상법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1. 기타 은행 경영의 기본이 되는 주요사항으로서 은행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와 그 실적 보고

2. 이사회부속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보고

3. 자회사의 중요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4.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5. 기타 이사회 및 은행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주주 및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 및 은행의 장기적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설계, 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며,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은행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은행의 경영이념과 장기적인 비전을 이해하고 이사회가 그러한 기반 위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사와 은행의 이익충돌을 방지할 의무를 진다.

③ 이사는 은행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은행,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⑤ 사외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은행등 (그 계열회사를 포함한 다)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0조(이사의 선임 기준 및 절차) ① 이사회는 은행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은행장의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등 선임기준 및 절차를 정한다.

② 은행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으로,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상임이사과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사외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외이사의 재선임시에는 이사회운영위원회의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11조(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 ① 이사는 임기 만료, 사임, 법령 및 정관상의 당연 퇴직 사유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퇴임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12조(이사회 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매 분기 1 회 이상 이사회 의장 또는 2 명 이상의 이사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소집목적을 기재하여 이사회 개최일 7 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절차를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이사회 의결권 행사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이사와 직접,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법인, 기타단체와 관련된 의안이 이사회에 상정되었을 때에는 당해 이사는 그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밝혀야 하며 당해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가 행하는 심의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이사가 특정주주의 추천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 당해 이사는 그 사실만을 이유로 은행과 당해 주주 또는 그 주주의 관계회사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기타 거래에 관계된 의안의 이해관계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제14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이사회등”)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을 결의하고, 이사회등의 구성, 활동상황,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며, 이러한 평가를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한다.
- ②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을 이사회등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할 때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한 개선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5조(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① 은행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각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 감사위원회
2. 리스크관리위원회
3. 보수위원회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소집을 위해서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의로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은행이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5. 그 밖에 은행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보수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의로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내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이사(사외이사, 비상임이사 제외)에 대한 성과 평정
6.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결의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은행장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2.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3. 임원 후보자 추천
4. 임원 후보자 발굴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5.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 관련 사항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23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 은행장은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씨티그룹의 "우리가 공유하는 책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고,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으며, 금융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은행장의 자격요건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집행간부는 은행업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두루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이후 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⑥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리스크관리책임자가 된 후에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2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24조(상임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은행장은 은행을 대표하며, 이사회에 결의를 집행하고 은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은행장은 이사회에 정책기준에 따라 은행의 전반적인 경영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며, 법, 규정 및 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은행장은 은행의 전략 방향 수립 및 전략의 정기적 점검을 해야 하고, 은행의 수익, 성장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독려해야 하며,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지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인 수석부행장, 부행장은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업무를 분장하며, 은행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집행간부는 은행장이 정한 업무분장에 의거 담당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며, 업무수행상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내규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은행은 집행간부의 최초 선임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에 보고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⑦ 은행은 능력에 근거한 집행간부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간부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25조(임원의 선임) ① 은행장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 경영승계와 관련한 은행장 「경영승계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은행장 「경영승계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은행장의 최소 자격요건
3. 은행장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4. 은행장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5. 은행장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6. 은행장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7. 기타 은행장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이사회는 은행의 상황,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항 제3호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또는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제4항의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은행장 대행자, 은행운영 및 향후 은행장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은행장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이사회는 제2항의 은행장 「경영승계규정」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수석부행장 또는 부행장으로 선임하며, 은행장을 보좌한다.

⑨ 집행간부는 은행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 등을 감안하여 은행장이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선임시 달리 정할 수 있음)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퇴임 등) ① 은행장은 임기만료, 사임, 법령 및 정관상의 당연 퇴직 사유, 해임 또는 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로 퇴임하며, 은행장을 선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은행장이 유고시에는 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인 수석부행장, 부행장은 임기만료, 사임, 법령 및 정관상의 당연 퇴직 사유, 해임 또는 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로 퇴임한다.

④ 집행간부는 임기만료, 사임 또는 해임 등에 의하여 퇴임하며, 해임사유는 개별 위촉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27조(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 은행은 씨티그룹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핵심 인재 검토(Talent Review)를 통해 임원 및 그 후보자들을 효과적으로 발굴, 육성 및 유지하며, 정기 또는 수시 연수를 통해 그 역량을 극대화한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28조(임원 성과평가) ① 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제외) 성과평가는 매년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성과평가 및 보상방안에 따른다.

②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임원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③ 은행은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사외이사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⑤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성과보상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29조(임원의 보수) ① 은행장 및 상임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한도 내에서 매년 보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 지급한다.

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급으로 구성되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집행간부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개별 위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과급은 매년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성과평가 및 보상방안에 따른다.

④ 임원(집행간부 포함)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지침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30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① 은행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씨티그룹의 “우리가 공유하는 책임”을 준수하고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경영승계 절차 및 계획,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최고경영자 후보 관리 등 자세한 사항은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경영승계규정」을 따른다.

③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는 인사본부가 담당하며, 이와 관련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관련업무는 법무지원부에서 지원한다.

④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원칙 등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제6장 공시에 관한 사항

제31조(정기공시)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내부규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 회사 내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 회사 내부기관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다.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선임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 라.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 마. 최고경영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시 선임에 대한 이유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해당사항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선임기준
- 라.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해당 은행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
- 마. 법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바. 사외이사 후보와 해당 은행(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 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타. 은행장 후보자 추천이유 및 은행장 후보자 경력
- 파.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후보추천 관련 사항
-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도 포함한다),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은행의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 라.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 마.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14조제7항의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등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 바. 사외이사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 지정 및 운용현황
 -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카. 은행과 사외이사등 소속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된 내부규정
 - 나. 은행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개요
 - 다.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내역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
 -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용현황

6. <삭 제>
7.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8. <삭 제>
9.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10. <삭 제>
11.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의 권고·지시사항 및 은행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12.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은행의 보상체계 의사결정 절차
 2.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 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상 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3.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 가.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 구분, 대상 임직원 수 포함)
 - 나.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 다.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
 - 라.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 마.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바.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 포함)
 - ③ 은행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수시공시) ① 은행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보수위원회규정」 제4조제3항 단서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은행은 「사외이사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통지에 같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절차 개요
2.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은행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

4. 사외이사 후보와 은행,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계법규 및 제6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 경력
 8. 기타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은행장을 추천하는 경우 은행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⑤ (삭제)

제33조(주주총회) ① 은행은 사외이사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사외이사후보추천 등 성격이 상이한 안건들을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공시방법)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준에 따른 공시는 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여야 한다.

제35조(규준 미준수에 대한 공시) 은행이 본 규범에서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과 그 이유(법령상의 특례적용 사유, 주주총회 의결 사유 등 본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1.5.17>

1. (시행일) 본 규범은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30>

1. (시행일) 본 규범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9>

1. (시행일) 본 규범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28>

1. (시행일) 본 규범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3>

1. (시행일) 본 규범은 201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4>

1. (시행일) 본 규범은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1>

1. (시행일) 본 규범은 201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1. (시행일) 본 규범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6>

1. (시행일) 본 규범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0>

1. (시행일) 본 규범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규정

제	정 : 1990.04.21
개	정 : 1995.02.22
개	정 : 1997.02.03
개	정 : 1998.02.02
개	정 : 1999.02.10
개	정 : 1999.02.12
개	정 : 1999.11.02
개	정 : 2000.03.20
개	정 : 2000.04.10
개	정 : 2000.05.15
개	정 : 2001.01.06
개	정 : 2001.05.17
개	정 : 2002.03.22
개	정 : 2002.12.04
개	정 : 2003.01.07
개	정 : 2003.03.25
개	정 : 2004.03.30
개	정 : 2004.06.11
개	정 : 2004.09.08
개	정 : 2004.10.28
개	정 : 2005.02.15
개	정 : 2007.03.28
개	정 : 2008.02.13
개	정 : 2008.12.10
개	정 : 2010.02.10
개	정 : 2010.03.10
개	정 : 2010.03.30
개	정 : 2011.02.09
개	정 : 2011.03.25
개	정 : 2012.05.07
개	정 : 2012.05.30
개	정 : 2014.01.04
개	정 : 2015.02.11
개	정 : 2015.03.27
개	정 : 2016.03.30

개 정 : 2016.07.20

개 정 : 2017.03.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4조(소집) ① 이사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이사회 의장 또는 2명 이상의 이사의 요구에 따라 소집하며, 분기중 경영성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소집목적에 기재하여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절차를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소집권자 및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매년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단,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 (이하 "선임 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의장의 역할과 책임) ① 이사회 의장은 주주 전체를 대표하여 이사회를 주재하며, 이사회가 활성화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은행장과 역할에 있어서 구분되며, "붙임 1"의 이사회 의장의 직무기술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은행장의 역할 및 책임) ① 은행장은 "붙임 2"의 은행장 직무기술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1. 이사회 정책기준에 따라 은행의 전반적인 경영 및 통제기능의 수행
2. 주요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
3. 법, 규정 및 사회적 의무의 성실 이행

② 은행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은행의 전략방향 수립 및 전략의 정기적 점검
2. 은행의 수익·성장목표 달성여부 확인 및 독려

3. 주요현안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이사회 지침 수행

제8조(결의사항 등) ① 이사회에 제출할 사항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소집

나. 주주총회에 제출할 사항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경영목표 및 평가

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

다. 은행장의 경비집행 전결한도

3. 조직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변경

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개정 등 은행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다.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라. 「이사회규정」, 「사외이사운영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이사회부속위원회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다만, 관계법령·감독규정·「정관」 등 상위규정의 변경에 따른 개폐 및 단순한 자구수정은 은행장에 위임한다.

4. 이사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가.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후보의 추천

나. 은행장, 준법감시인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다.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등과 은행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단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승인

라. 대표이사 은행장 「경영승계 규정」 제/개정

마. 은행장 승계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평가, 상시적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은행장 승계 개시 결정 및 직무대행자 선정

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 수립

5.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나. 금융채의 발행

6.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및 이사회부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8. 중요 계약 및 소송에 관한 사항

가.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인 중요한 출자

나. 건당 100억원을 초과하는 유·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다. 건당 소가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

9.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10. 기타사항

- 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나.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다.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 절차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 라. 상법 기타 다른 법령, 「정관」 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1. 기타 은행 경영의 기본이 되는 주요사항으로서 은행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와 그 실적 보고
 - 2. 이사회부속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보고
 - 3. (삭제)
 -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발굴 및 자격검증 내용에 대한 보고
 - 5. 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 보고
 - 6. 자회사의 중요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 7.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 8. 기타 이사회 및 은행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1. 감사위원회
- 2. 리스크관리위원회
- 3. 보수위원회
-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각 위원회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항의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팩스·컴퓨터통신·인터넷 E-Mail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다.

⑤ 전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10조(결의방법)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1조(의결권제한) 이사회가 의결할 때 당해 의안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2조(이사회 전담기구) ① 이사회는 이사회 사무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구로 의사담당부서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사담당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13조(감사위원회의 보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본점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담당부서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15조(사외이사) ① 사외이사는 취임시 사외이사로서 책임을 다하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밝히는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관계 직원 및 각 부서에 대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00.5.15>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0. 5.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6>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1. 1. 6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17>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1. 5.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2>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2. 3.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4>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2. 1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7>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3. 1. 7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25>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3. 3. 2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30>

1.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임기종료시까지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2004.6.11>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4. 6.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8>

1.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다목, 제8조제2항제4호다목, 제9조의 개정규정은 씨티은행 국내지점의 영업을 양수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2004.10.28>

(시행일자) 이 규정은 씨티은행 국내지점의 영업을 양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5>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5. 2.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8>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7. 3.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3>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 2.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0>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 12.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10>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0.2.1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0>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0. 3.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2항3호는 관련 법령에서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시행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3.30>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0.3.3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9>

1.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임

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3.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정기주주총회의 「정관」 개정 결의일(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5호의 점포 및 경비관리위원회의 폐지 및 제8조제2항제2호라목의 사항은 정기주주총회의 「정관」 개정 결의일(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5>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1. 3.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7>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2.5.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30>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2.5.3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4>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4.11.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1>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5.2.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5.3.2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30>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6.3.3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20>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6.7.20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0>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7.3.30 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규정

제	정	: 2000.03.20
개	정	: 2001.05.18
개	정	: 2002.03.22
전면개	정	: 2002.06.28
개	정	: 2004.03.30
개	정	: 2004.09.23
개	정	: 2005.11.30
개	정	: 2008.09.03
개	정	: 2009.02.10
개	정	: 2011.02.09
개	정	: 2011.03.25
개	정	: 2012.05.30
개	정	: 2013.11.29
개	정	: 2014.03.28
개	정	: 2014.11.26
개	정	: 2015.03.27
개	정	: 2016.0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사명) 감사 위원회는 이사회의 상임 위원회로서 이사회가 다음 사항에 관한 감독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 재무제표 및 재무 보고 절차, 내부 회계 및 재무 관리 시스템
- 2. 내부 감사 실시
- 3.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및 재무 보고 관련 내부 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독립적인 연례 종합 감사에 대하여 문제제기 또는 권고 제시, 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인의 자격, 독립성 및 감사 성과에 대한 평가
- 4. 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 5. 공시 관련 통제 및 절차를 비롯한 국내 법규 요건의 준수
- 6.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본 규정에 따른 책임과 권한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및 공시의 완결성 및 정확성, 일반 회계 원칙 및 관련 규정예의 부합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은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인 책임사항이다.

제4조(역할) 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의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경영진에 보고된 중대한 내부감사 지적사항, 경영진의 대응 및 관련 시정조치 계획의 진행상황 검토 및 협의
3. 감사본부장 및 내부감사조직의 업무 수행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내부감사 조직의 독립성 보장, 연간감사계획의 실행을 비롯한 제반 업무에 필요한 적정 인력 보유
4.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5. 감사본부장 및 감사부장 임면에 관한 승인
6. 감사본부장 및 내부감사 관련 직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8. 주요 외부감사인력 배치 및 선임감사파트너의 교체계획, 독립적인 감사계획 및 감사범위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포함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9.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10.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11.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5조(권한) ①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품의 요구
2.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은행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련법령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재무제표 연간 감사 결과 및 공시 요건을 검토 및 논의하여야 한다.
5. 1)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의 설계 또는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나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2)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영진 또는 기타 직원이 연루

- 된 부당행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경영진과 검토 및 논의한다.
6. 외부감사인인 보고서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기적인 검토 및 논의하여야 한다
 - 가. 주요 회계 정책 및 준칙 적용
 - 나. 재무정보 처리의 국내회계 원칙 부합성
 - 다. 경영진에 보고된 중대한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은행의 대응 또는 미수정 사항 명세서 등 외부감사인 및 경영진 간의 기타 중요한 서면 커뮤니케이션
 - 라. 감사 범위의 제한, 요청 정보에 대한 접근 제약, 감사나 회계 문제점에 관한 경영진과의 중대한 견해 차이 등 감사업무 진행 중 발생한 어려움
 7.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여야 한다.
 - 가. 대손 총당금 현황 및 문제점
 - 나. 법규 및 회계관련 현안 과제, 부외거래 처리 체계 및 전술한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 규정, 특히 경영진의 재량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규정
 8. 재무 보고 관련 내부통제 구조 및 절차에 대한 본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경영진과 검토 하여야하고, 내부통제 및 절차에서 발견된 중대한 결점 또는 취약점을 포함한 내부 통제 및 절차의 효과에 대한 경영진의 결론을 정기적(적어도 분기별로)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9.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1) 재무보고 관련 내부 통제 구조 및 절차의 효과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및 2) 재무보고 관련 내부 통제 구조의 유효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에 대해 연례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주요 재무적 리스크 익스포저와 이에 대한 경영진의 감시 및 통제 조치에 대해 최소한 연례적으로 경영진과 검토 및 논의하여야 한다.
 11. 중요 법규 준수 이슈, 내부통제 및 규제 준수에 관한 감독당국 보고 요건 이행, 재난 복구를 포함한 업무연속성 유지 계획, 부당거래 및 운영 손실, 내/외부 부당거래 사고 관련 통제 강화 및 개선 계획, 전산 및 정보 보안 등에 대하여 담당 경영진으로부터 분기별로 또는 필요에 따라 보고 받고 논의하여야 한다.
 12. 매년 본 규정의 적합성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와 타부서로 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정보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중요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경영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영진은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회의중에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은행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내부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 독립적인 공인회계사 또는 기타 외부감사자가 위원회에 제한없이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구성

- 제9조(구성)**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3장 회의

- 제10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 1인을 둔다.
-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종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경영진, 내부감사, 독립외부감사인과 각각 별도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 제12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0조 제2항을 준용한다.
- ②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결의·심의사항)** ①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3.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4.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6.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7. 내부감사관련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8. 감사본부장 및 감사부장 임면에 대한 승인
9. 감사본부장 및 내부감사 관련 직원의 성과평가
10.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

11. 「감사본부장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12. 관련법령, 「정관」,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1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내부통제시스템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2.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은행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4.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5. 업무추진비 등 은행의 보수성경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6.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7.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
 9.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은행이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
 10. 관련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11.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감사업무관련 주요자료의 검토
 12. 감독당국의 감사결과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과정에 관한 사항
 1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1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감사 및 보고

제15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본부장에게 위임하며, 감사본부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3.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4. 감독당국관련 각종 업무보고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위임한 감사본부장의 직무와 감사보조기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본부

장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 제17조(권한 대행)** ① 감사위원의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감사본부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주인을 받는다.
- ② 감사본부장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주인을 받는다.
-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행사를 행사하려는 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이사회보고)**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이사회 부의 사항과 검토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19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감사본부장은 제16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이외에 중요 업무 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1조(감사보조기구)**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서 단위의 감사 보조기구로 감사부와 IA부를 둔다.
- ② 감사 보조기구에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원과 적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22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23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1.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0. 3. 20 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회계 및 감사위원회규정, 감사인선임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3. (경과규정)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상근감사위원직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현행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2001.5.18>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2>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28>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이전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시행일이전 규정에 의한 임기종료시까지 제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2004.3.30>

1.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종료시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9.23>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씨티은행 국내 지점의 영업을 양수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3>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3>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2.10>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9>

1.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정기주주총회의 「정관」 개정 결의일(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5>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30>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9>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28>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6>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30>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	정 : 1999.02.12
개	정 : 1999.11.02
개	정 : 2000.03.20
개	정 : 2000.08.18
개	정 : 2002.03.22
개	정 : 2004.09.23
개	정 : 2005.02.15
개	정 : 2005.05.25
개	정 : 2007.06.12
개	정 : 2007.08.29
개	정 : 2007.11.28
개	정 : 2011.03.25
개	정 : 2012.05.30
개	정 : 2012.08.29
개	정 : 2015.03.27
개	정 : 2016.02.17
개	정 : 2016.07.20
개	정 : 2016.10.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결의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비즈니스 그룹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진행을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심의·의결사항 등) 위원회에 제출할 사항은 심의·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1. 심의·의결사항

- 가.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나. 은행이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 마.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바.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사.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아.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자금조달계획
- 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 차. 각 부문별 리스크에 관한 사항
- 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관리에 관한 사항
- 타. 신용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 파. 경제적 자본이 가용자본 초과시의 대응방안
- 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 및 내부자본적정성 보고서
- 거.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보고사항

- 가. 건당 100억 이상의 부실여신 보고
- 나.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규 거액신용공여 및 현황보고
- 다. 위기상황분석 결과 (반기 1회 이상)

제6조(소집) ① 위원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은행장,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관계직원 출석, 관계자료 제출 및 외부자문)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리스크관리담당임원) ①. 리스크관리담당임원(CRO)은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로서 위원회를 보좌한다.

② 리스크관리담당임원은 리스크관리를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의 요건
2. 은행 업무, 금융시장, 바젤, 고위험상품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
3. 국내 금융감독/규제체계에 대한 인식
4. 리스크관리담당임원은 독립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업무는 겸직할 수 없다.

부칙 <1999.2.12>

(시행일) 이 규정은 1999. 2.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

(시행일) 이 규정은 1999. 11. 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0>

(시행일) 이 규정은 2000. 3.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18>

(시행일) 이 규정은 2000. 8.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2>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3.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23>

(시행일) 이 규정은 씨티은행 국내지점의 영업을 양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5>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2.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5.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2>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6.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29>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8.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8>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1.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5>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30>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5.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29>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8.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7>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2.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20>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7.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6>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0. 26.부터 시행한다.

보수위원회규정

제 정 : 2014.11.04
개 정 : 2015.03.27
개 정 : 2016.10.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임원"은 이사(사외이사, 비상임이사 제외)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한다.

②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 판매,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결의로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사외이사는 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사외이사의 참여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역할) 위원회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임직원의 보수체계의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사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진행을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심의·의결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한다.

1.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내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

- 하 “임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임원등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4. 임원등에 대한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이사(사외이사, 비상임이사 제외) 에 대한 성과 평정
 6.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제8조(소집)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인 출석, 관계자료 제출 및 외부자문)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의 작성 및 보관은 의사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부칙 <2014.11.4>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4. 11. 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5. 3.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6>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6. 10. 26.부터 시행한다.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 정: 2010.02.10
개 정: 2011.02.09
개 정: 2015.03.27
개 정: 2016.03.30
개 정: 2016.10.26
개 정: 2017.0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은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의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등"이라 함은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2. "주식"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3. "자회사"라 함은 은행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4.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제3조(법령, 규정 등과의 관계) 사외이사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 은행은 사외이사의 수가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2장 사외이사의 선임

제5조(사외이사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② 은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은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제6조(사외이사 선임절차) 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제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사외이사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삭제)

제8조(사외이사후보 추천 절차) ① 위원회는 은행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기관 등 은행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규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9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은행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절차 개요

2.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4. 사외이사 후보자와 은행(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계법규 및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기타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장 사외이사의 임기

제10조(사외이사의 임기) 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의 만료시점을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함에 따라 임기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④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제18조에 의한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11조(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은행은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를 말한다)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 사외이사의 역할 및 활동 등

제12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은행,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외이사의 권한) 사외이사는 은행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사외이사의 책임)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은행,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을 이사회등 참여 등에 할애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은행등(그 계열회사를 포함한 다)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은행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은행등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은행은 매년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시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액의 20%로 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액의 최대 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한다.

⑥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사외이사등")이 수탁자,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 임직원이었던 대학 기타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 은행(자회사 및 계열회사 포함) 및 은행(자회사 및 계열회사 포함)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은행등이 회원, 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 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하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이사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
2. (삭제)
3.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 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 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

제15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④ 은행은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 연임 제한) ① 사외이사는 경영발전보상위원회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경영발전보상위원회 등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은행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제5장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18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 은행은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직원 평가 등 사외이사의 평가 방법

2. 제1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주기

④ 은행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외이사의 보수) ① 은행은 사외이사에게 사외이사의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 실적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수립한다.

② 사외이사의 보수를 은행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제6장 사외이사 활동의 지원

제20조(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설치) ① 은행은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외이사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지원

2.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업무지원

3. 제7조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검증업무 지원

5.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③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동조 제2항 제3호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은행은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경영정보를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1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사외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은행은 사외이사가 이사회등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 회계, 경영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① 은행은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은행의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부칙 <2010.2.1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2월 1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제5조 및 제10조는 본 규정 시행 후 선임 (연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되는 사외이사에 대해 적용하며, 제8조제4항은 본 규정에 의해 평가 받은 사외이사의 연임시에만 적용한다.

2. 본 규정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본 규정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제10조제3항, 제4항을 적용한다.

3. 은행은 현재 사외이사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본 규정 시행 후 최초 주주총회부터 제11조에 따른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와 준수계획을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시행계획을 수정할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다.

4. 은행은 본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규정 시행 당시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자도 제14조제6항제1호와 관련해서는 본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1.2.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3.2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3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 정 : 2015.11.17

개 정 : 2017.03.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에 의거하여, 은행,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 후보자로서 추천하고 그와 관련한 절차를 정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진행을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심의/의결 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후보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앞 추천
2. 임원의 자격요건의 설정
3. 임원 후보자 발굴에 관한 사항
4. 제3호의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5.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 관련 사항

② 위원회는 은행장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임원 후보자 발굴 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추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외부 자문기관 등 은행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후보자 발굴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소집)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소집목적에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부서 및 업무) ① 은행은 은행장 승계 관련업무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본부에 지원부서를 둔다.

②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임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임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기타 은행장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③ 지원부서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직원 출석, 관계자료 제출 및 외부자문)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각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①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은행장 후보자 추천 공시) 위원회가 은행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은행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전에 별표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 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은행장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은행장 후보자 추천이유
6. 은행장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은행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규정 및 「정관」을 준용한다.

부칙 <2015.11.17>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5. 11.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0>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7. 3. 30. 부터 시행한다.

경영승계규정

제 정 : 2015.11.17

개 정 : 2017.03.3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표이사 은행장 (이하 "은행장")의 퇴임 또는 유고 사유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후임 은행장 또는 직무대행 선임 (이하 "경영승계") 과 관련된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이사회는 본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며, 매년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 자격요건 설정, 은행장 후보자 발굴 및 관리 등 경영승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① 은행장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2. 사임, 해임, 관계 법령상 결격요건 발생으로 인한 퇴임
3. 질병 및 천재지변 등 발생으로 인한 유고시

②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 등은 제1항의 사유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결정 및 직무대행자 선정) ① 이사회는 상기 제3조의 사유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 별로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결정을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최소 임기만료 30일 이전
2. 사임, 해임, 관계 법령상 결격 요건 발생으로 인한 퇴임: 사유발생 (예상) 또는 발생 즉시
3. 질병 및 천재지변 등 발생으로 인한 유고 시: 이사회의 판단으로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 결정

② 이사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3호의 경우 「정관」 제26조제3항에 의거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의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의 개시 결정 후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그 사유와 필요시 선임시까지의 직무대행자 선정, 은행운영 및 향후 은행장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은행장 최소 자격요건)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장이 될 수 없으며, 은행장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단, 은행장으로 선임된 자가 은행장으로 선임된 후에 지배구조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② 은행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2.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추고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3.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 역량을 갖추고, 씨티그룹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자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자격요건 이외의 은행장의 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은행장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① 위원회는 은행,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은행장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후보군 선정 시 은행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핵심인재 검토(Talent Review)를 통해 발굴된 잠재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포함한다.

③ 은행은 정기 또는 수시 연수를 통해 후보자의 역량을 극대화 하여, 경영의 안정적 승계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은행장 예비후보자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후 자격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① 제4조에 의한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최종 은행장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제1항의 자격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8조(지원부서) ① 은행장 승계업무 관련 업무는 인사본부가 담당한다.

② 은행장 승계와 관련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관련 업무는 이사회 지원부서인 법무지원부에서 담당한다.

제9조(공시) 이사회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본 규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5.11.17>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5. 11. 17. 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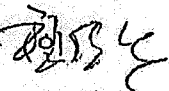
부칙 <2017.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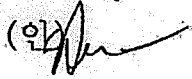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7. 3. 30. 부터 시행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내역

(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함)

1. 일 시 : 2017. 3. 8. (수) 오후 2:00-2:10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7. 3. 8. (수) 오후 2:10-2:15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2. 장 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 (다동) 한국씨티은행 10층 이사회실
3. 위원 현황
 - ☐ 위원수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5명(사외이사 4명)
2.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4명(사외이사 4명)
 - ☐ 위원장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한상만 선임 사외이사
2.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김경호 사외이사
4. 참석자(위원 이외의 배석자 포함)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석자: 한상만 사외이사(위원장), 김경호 사외이사, 한상용 사외이사,
안병찬 사외이사, 박진희 은행장
배석자: 이창원 부행장, 양재선 상무변호사
 - (2)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참석자: 김경호 사외이사(위원장), 한상만 사외이사, 한상용 사외이사,
안병찬 사외이사
배석자: 이창원 부행장, 양재선 상무변호사
5. 불참자 : 없음.
6. 후보자 선정방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
(상기 위원회 모두,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의안 결의 시, 해당 본인 의결권 제한)

(주)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한상만 

(주)한국씨티은행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김경호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 검토보고서

1. 자격요건

1) 소극적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바, 사외이사 후보자들로 하여금 임원선임심사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진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은행의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다른 회사(은행의 자회사등, 자은행,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은행의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여야 하며,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며, 은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함(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5조).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퍼듀대학교 경영학 석사 및 회계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회계 분야 전문가임. 현재는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및 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재정통계자문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등 회계 및 경영 분야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행의 사외이사로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은행의 감사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음. 당행과 이해상충관계가 없으며, 학계에서 존경 받는 교수로 공정성과 윤리성 요건 또한 충족함.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 부속위원회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은행의 사외이사로서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충실성 요건도 갖추었음.

2. 사외이사 평가결과

사외이사 평가 결과 평가 항목별 평균 4.8점(5점 만점)을 받는 등 재임기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3. 검토 결과

후보자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행의 사외이사로서 재직하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고 당행의 전략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후보자는 지배구조법 및 당행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도 우수하므로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